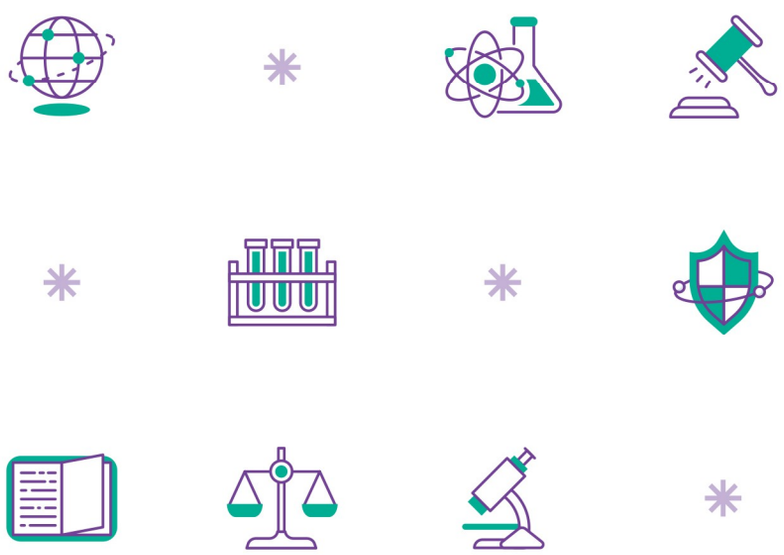
별권 3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처분 가이드라인

2026. 0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Ministry of Science and IC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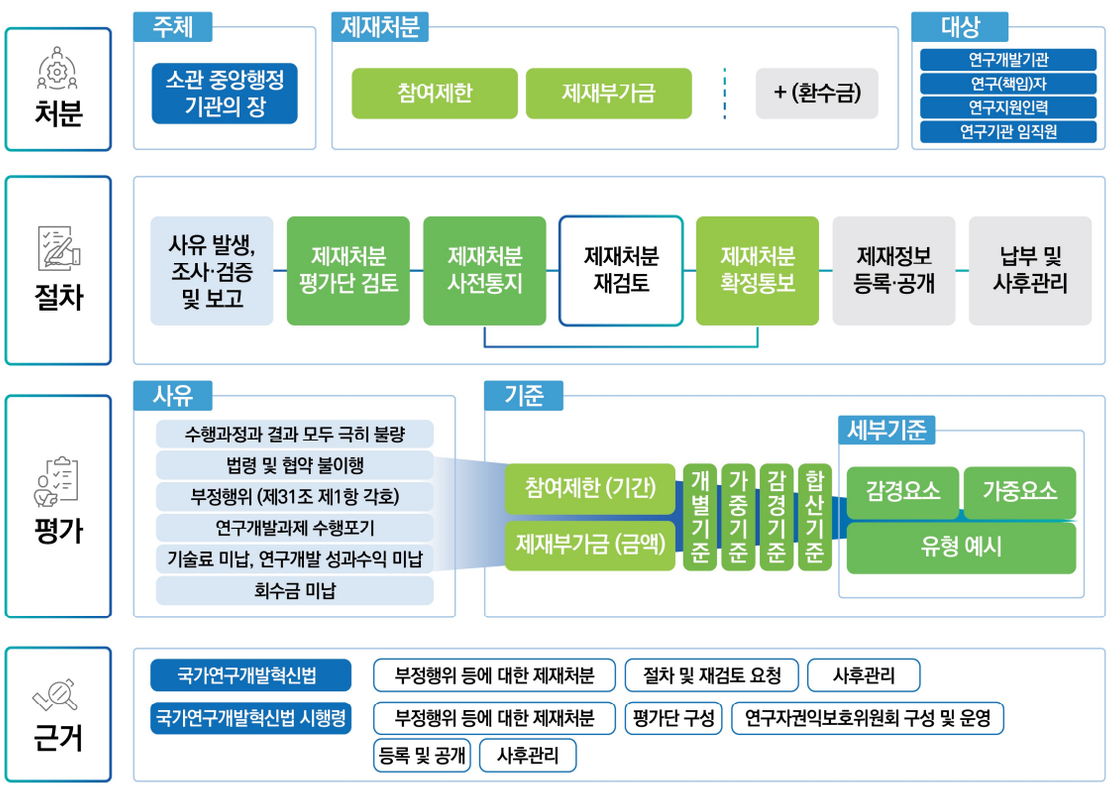
KISTEP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orea Institute of S&T Evaluation and Planning

※ 관련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윤리권익보호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연구윤리자산보호센터

요 약 문

[제재처분 가이드라인 개요]

◇ 요약문은 제재처분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본 가이드라인의 효과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주요 내용의 개괄적인 안내를 제공하고 있으니, 상세한 내용은 반드시 본문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1. 제재처분제도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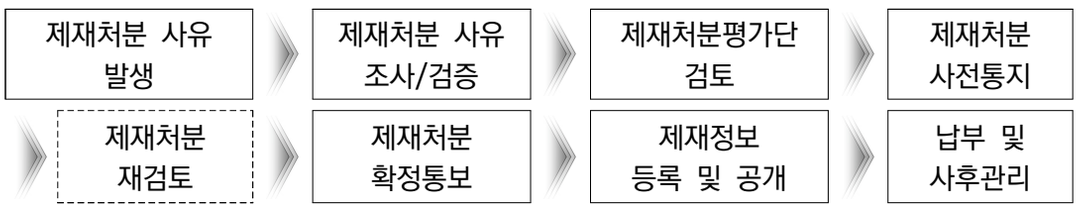
- 법적 근거 (p.3~8)
  - 제재처분제도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34조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9조-제63조에 기반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제재처분 사유*와 대상자, 유형과 시효 등을 규정하고 제재처분의 절차, 재검토 요청, 사후관리 등의 근거를 제공함

    * 혁신법 제32조 제1항 각호에 따라 부정행위를 포함한 제재처분 사유가 정의되며, 과학기술기본법으로부터 변경·추가·제외 (p.18~19)
  - 동법 시행령을 통해 제재처분 기준이나 평가단 및 위원회의 구성 등을 규정

- 제재처분의 주요 용어·개념 (p.9~15)
  - 제재처분의 주체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임
  - 제재처분 대상자는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연구자, 연구지원인력 또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임직원이며, 사유가 있다면 주관·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 모두 제재처분 대상자가 될 수 있음
  - 사안의 경중을 고려하여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가연구개발활동(연구지원은 제외)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는 행정처분을 내리거나, 이미 지급한 정부 연구개발비의 5배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함
  - 연구개발기관이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한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중 위반한 금액에 대해 환수할 수 있음
  - 혁신법 제31조 제1항 각호 및 동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각호에 따라 부정행위를 정의
- 혁신법에 따른 변경 (p.16~23)
  - 혁신법 제3조 및 제4조에서 적용 예외를 인정하는 사업의 경우 해당 조항과 관련된 제재처분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참여제한은 과제별 10년 이내로 부과 가능하며, 연구지원을 제외한 국가연구개발활동 전반에 대해 참여를 제한함
  - 10년 이내의 국가연구개발활동 참여제한 또는 이미 지급한 정부 연구개발비의 5배 이내 범위의 제재부가금 부과 가능
  - 제재처분 사유가 발생한 연구개발과제의 종료일 또는 해당 제재처분 사유가 발생한 국가연구개발활동의 종료일로부터 10년까지 처분 가능
  - 단일 제재처분에서 5년 이상의 참여제한을 받았거나 제재부가금 부과액이 지급한 정부 연구개발비의 3배 이상으로 처분된 경우 제재처분 공개
  - 사전통지된 제재처분 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는 제재대상자가 제3의 기관인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에 해당 처분의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는 절차 신설 등

2. 제재처분 절차

- 제재처분 절차 (p.24~47)



  - 제재처분시에는 제재처분평가단을 구성·운영하여 제재처분의 필요성, 종류, 수준 등을 검토해야 하고, 제재사유등을 고려하여 관련 과학기술분야, 법률분야, 회계분야 등의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노력해야 함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재처분평가단이 검토한 결과를 고려하여 관련자에게 개별적으로 제재처분 사전통지를 해야 함
  - 사전통지 내용에 이의가 있는 제재대상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유를 갖추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재검토 요청 의견 제출 가능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재검토 요청 의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제재처분의 종류와 수준을 결정하고 그 내용을 관련자에게 각각 통보해야 함
  - 사전통지 및 확정통보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며,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등의 동의가 필요함 (p.34)
    * 송달은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해당 문서가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함 (p.35~37)
  - 환수 및 제재부가금 처분을 받은 자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고, 그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함 (p.41~46)
    * 국세 강제징수란 기한 내에 임의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청이 체납자의 재산에 대해 압류, 압류재산의 매각·추심·청산 등을 진행하는 행정상 강제집행을 의미

3. 제재처분 기준

- 제재처분기준은 시행령 제59조 1항 및 2항 관련 [별표6]과 [별표7]에 정리
  - 참여제한과 제재부가금에 대한 개별기준, 감경기준, 가중기준, 합산기준 제시
- 참여제한 처분기준(시행령 제59조제1항 관련) : 시행령 [별표6] (p.48~50)
  - 혁신법 제32조제1항 각호가 규정하는 위반행위에 따라 참여제한의 개별기준이 규정되며, 이를 기준으로 2분의 1범위에서 가중·감경 가능
    * 시행령[별표6] 1호 가목/나목에 가중/감경기준 사유 명시(p.49~50)

- 연구개발비 회수금 미납, 기술료 일부 또는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일부 미납의 제재처분 사유인 경우에는 가중·감경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서로 다른 연구개발과제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각 연구개발과제별로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해 시행령 [별표6]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참여제한 기간 및 가중·감경 기준을 적용한 후 산출된 참여제한 기간을 모두 합산함

  * 혁신법 제3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가중·감경 및 합산 시 참여제한 10년을 한도로 함

● 제재부가금 처분기준(시행령 제59조제2항 관련) : 시행령 [별표7] (p.50~55)

- 제재부가금 처분은 사안별로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대상을 ①기관 ②개인 ③기관·개인 모두 등으로 결정 가능

- 혁신법 제32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각호 규정에서 정하는 위반행위에 따라 제재부가금 개별기준이 규정되며, 법령에서 제시한 사유에* 따라 부과액의 2분의 1범위에서 가중 감경할 수 있음

  * 시행령[별표7] 1호 가목/나목에 가중/감경기준 사유 명시(p.54)

-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서로 다른 연구개발과제에서 발생한 경우, 각 연구개발과제별로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한 개별기준에 따른 제재부가금 가중·감경 기준을 적용한 후 산출된 제재부가금을 모두 합산

- 가중 및 합산 시 제재부가금은 이미 지급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5배를 한도로 함

● 제재처분사유별 가중·감경 세부기준 (p.56-81)

- 처분상 재량권이 갖는 중요성에 상응토록 형평, 타당한 상세기준을 제시

- 혁신법 제32조 제1항 및 제3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제재처분 사유들의 참여제한 및 제재부가금 감경·가중요소 및 범위를 유형 예시와 함께 제시

위반행위 유형의 결정 (혁신법 제32조 각호)	→	가중·감경 여부 결정 (혁신법 시행령 59조 [별표6], [별표7])	→	처분정도의 결정 (가중·감경 범위 내에서 처분정도 결정)

※ 세부기준에 기재된 '유형의 예시' 및 '가중·감경요소의 예시'는 범례에 불과함

※ 가중사유가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 중복하여 가중 처분가능하나, 상한선(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음
이는 감경처분의 경우에도 동일하고, 이 때 하한선(2분의 1) 미만으로 감경할 수 없음

CONTENTS

목 차

제1장 제재처분 가이드라인 소개 ····· 1

1. 배경 ····· 1
2. 목적(활용대상 및 활용방법) ····· 1
3. 주요내용 및 구성 ····· 1

〈참고 : 제재처분 관련규정 연혁〉 ····· 2

제2장 제재처분제도 개요 ····· 3

1. 법적 근거 ····· 3

(1)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 ····· 3
(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 5
(3)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 8

〈부칙〉 ····· 8

2. 주요용어 정리 ····· 9

(1) 제재처분 주체 ····· 9
(2) 제재처분 대상자 ····· 10
(3)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연구개발과제 ····· 11
(4) 참여제한 ····· 11
(5) 제재부가금 ····· 12
(6) 연구개발비 회수금 ····· 12
(7) 연구개발비 환수 ····· 13
(8) 부정행위 ····· 14

CONTENTS

목 차

3. 혁신법에 따라 변경된 제재처분 주요내용 ····· 17

(1) 제재처분 적용범위 ····· 17

(2) 제재처분 제척기간 도입 ····· 18

(3) 제재처분 사유의 변경 등 ····· 19

(4) 제재처분의 종류 및 참여제한 기간·범위 조정 ····· 21

(5) 제재처분의 재검토를 위한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신설 ····· 23

(6) 제재처분 공개 ····· 24

제3장 제재처분 절차 ····· 25

1. 제재처분 사유 발생에 따른 조사·검증 및 보고 ····· 25

(1) 부정행위의 경우 ····· 25

(2) 그 외의 경우 ····· 27

2. 제재처분 평가단 검토 ····· 28

(1) 제재처분 평가단 구성 ····· 28

(2) 제재처분 평가단 역할 ····· 28

3. 제재처분 사전통지 ····· 29

4. 제재처분 재검토 ····· 30

〈참고 : 재검토요청서 서식〉 ····· 31

5. 확정통보 ····· 34

6. 사전통지 및 확정통보의 방식 : 처분효력의 발생 ····· 34

(1) 문서 송달의 방식 ····· 35

(2) 송달의 효력 발생 ····· 37

CONTENTS

목 차

7. 제재정보 등록 및 공개 ····· 38

8. 제재부가금·환수금 납부 및 사후관리 ····· 39

9. 국세 강제징수처분 ····· 41

(1) 국세 강제징수의 개념 ····· 41

(2) 국세 강제징수 절차 ····· 41

(3) 압류 해제 및 유예 ····· 44

(4) 납부 대상기관의 부도·폐업·회생·파산 시 처리 방법 ····· 45

(5) 소멸시효 ····· 47

제4장 제재처분 기준 ····· 48

1. 제재처분 일반 기준 ····· 48

(1) 참여제한 처분 기준 ····· 48

(2) 제재부가금 처분 기준 ····· 52

2. 제재처분사유별 가중·감경 세부기준 ····· 57

(1) 수행과정 및 결과의 극히 불량 ····· 58

(2) 법 또는 협약 상 의무 위반 ····· 60

(3) 연구개발 자료·성과의 위조·변조·표절 및 부당한 저자 표시 ··· 61

(4)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 위반 ····· 63

(5)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관리 위반 ····· 67

(6) 보안대책 위반 ····· 69

(7) 보안사항 국내 누설 및 유출 ····· 71

(8) 보안사항 국외 누설 및 유출 ····· 72

CONTENTS

목 차

(9)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 신청 또는 수행 ····· 73
(10)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활동의 건전성 저해 행위 ····· 75
(11)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포기 ····· 77
(12) 기술료 또는 연구개발성과 수익 미납 ····· 79
(13) 연구개발비 회수 금액 미납 ····· 80

제5장 제재처분재검토 주요쟁점사항 및 검토결과 ····· 81

1. 혁신법 시행 이전 행위에 우선 적용 가능한 혁신법 규정 ····· 81
2. 연구자 등이 타 과제로 인해 참여제한 처분을 받은 이후 수행중인 기존 과제의 중단 여부 ····· 82
3. 연구개발비 사용용도 기준 위반 금액의 자진반납 시 환수처분 금액 산정 기준 ····· 83
4. 수사·소송 등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한 제재처분 ····· 85
5. 행정심판·소송 진행 시 조치사항 ····· 86

〈부록〉 연구자를 위한 신고·보상 제도 안내 ····· 88

제1장 제재처분 가이드라인 소개

1. 배경

- 부처별 상이한 규정에 따른 연구현장의 불편 해소와 정부R&D 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목적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정 및 시행('21.1월)
  - 혁신법 시행으로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의 제재처분 재검토 절차가 도입되고 활성화됨에 따라 각 부처의 제재처분 재검토 요청 수요가 증대되는 상황에서
  - 부처 간 제재처분의 편차를 줄이고, 유사 사례 간 처분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통일된 기준을 제시하여 일선 연구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고, 충실하고 심도 있는 제재처분 검토를 지원하고자 함

2. 목적(활용대상 및 활용방법)

- 소관 중앙행정기관 및 전문기관의 제재처분 관련 담당 실무자들이 제재처분 제반절차 상 업무를 수행하면서 참고 할 수 있도록 마련
  - 본 가이드라인은 절대적인 원칙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제재처분의 절차를 진행하면서 참고할 내용으로, 법적구속력을 갖지 않는 권고적 기준임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제재처분 검토 시 합리적인 기준으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함

3. 주요내용 및 구성

- 제2장(제재처분제도 개요) 제재처분제도의 법적근거, 주요용어 정리, 혁신법의 제정에 따라 변경 된 주요내용 등을 정리
- 제3장(제재처분 절차) 제재처분의 절차별 준수 및 참고가 필요한 사항들을 제시
- 제4장(제재처분 기준) 제재처분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재처분 시 고려해야 할 일반기준 및 가중·감경 세부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 등 소개
- 제5장(제재처분 주요쟁점사항 및 검토결과)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의 제재처분 재검토회의 등에서 논의되었던 주요쟁점사항에 대한 검토기준을 제시하여 유사한 사안의 제재처분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소개

〈 참 고 : 제재처분 관련규정 연혁 〉

- ’01. 12월 국가R&D사업 제재 근거 마련
  - 참여제한 최대 2년
    (이후, ’05. 3월 최대 3년 → ’08. 5월 최대 5년으로 확대(공동관리규정 제20조))
- ’05. 3월 참여제한 정보 공동관리
  - 국가과학기술정보망 → 현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NTIS)
- ’10. 2월 사업비 환수 제도 신설
  -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신설(참여제한 내용 포함)
- ’14. 5월 제재부가금 제도 신설* 및 제재 대상 확대**(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개정)

  * 연구비 용도외 사용 시 사업비 환수 외 징벌적 과징금 부과(부정 사용액의 5배 이내)

  ** 연구책임자, 연구개발기관, 기업 → 참여연구원, 단체, 소속 임·직원 추가
- ’14. 12월 환수금 미납 시 강제 징수 근거 마련* 및 환수금 처분 승계**
  -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개정

    *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 양도, 합병 시 양수자 또는 합병 기업에게 미납 환수금 처분 승계
- ’15. 6월 환수금 미납 시 제재근거 신설
  -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개정
- ’15. 12월 동일한 참여제한 사유시 10년 범위 내 참여제한 기간 확대
  -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개정
- ’16. 7월 동일한 참여제한 사유시 10년 범위 내 참여제한 처분 세부 기준 마련
  - 공동관리규정 제27조
- ’17. 5월 제재조치 정보를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지체 없이’ 등록 신설
  - 공동관리규정 제27조
- ’19. 3월 참여제한 및 사업비환수에 대한 세부적인 절차 및 방법 고시 근거 신설
  - 공동관리규정 제27조
- ’21. 1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정에 따른 제재처분 제도의 대대적 개편
  -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신설 등

제2장 제재처분제도 개요

1. 법적 근거

(1)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

-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법 제32조)
  - 제재처분 사유, 제재처분 대상자, 제재처분 유형 및 제재처분 시효 등

법 제32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연구자, 연구지원인력 또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가연구개발활동(연구지원은 제외한다)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거나 이미 지급한 정부 연구개발비의 5배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12조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과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2.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이 법 또는 협약에 따른 의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제15조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가 변경 또는 중단된 경우
3.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
4.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5.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8조제2항에 따른 기술료의 일부 또는 수익의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6.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제7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회수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 처분이나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은 병과 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재처분과 별도로 이미 지급한 정부 연구개발비 중 제재사유와 관련된 연구개발비를 환수할 수 있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재처분을 하거나 연구개발비를 환수하는 때에는 제재사유의 중대성, 위반행위의 고의 유무, 위반 횟수,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단계 및 진행 정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제재처분은 그 제재사유가 발생한 연구개발과제의 종료일 또는 그 제재사유가 발생한 국가연구개발활동의 종료일부터 10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⑥ 제1항에 따른 제재사유별 참여제한의 기준 및 제재부가금의 부과기준, 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환수의 기준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재처분의 절차 및 재검토 요청 등(법 제33조)
  - 제재처분 평가단 구성, 제재처분 사전통지, 이의신청,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의 재검토, 제재처분의 확정통보 및 제재처분 등록·공개 등

● 제재처분의 사후관리(법 제34조)

- 환수금 또는 제재부가금 미납 시 독촉 등

법 제33조(제재처분의 절차 및 재검토 요청 등) ①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2조에 따라 제재처분을 하려는 때에는 제재대상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제재처분평가단(이하 이 조에서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제재처분의 필요성, 제재처분의 종류·수준 등 제재처분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과제가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경우에는 평가단을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평가단이 검토한 결과를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제재처분의 내용 등 「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1. 제재대상자
2. 제재대상자의 소속 기관의 장
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된 제재처분의 내용(이하 이 조에서 “통지내용”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제재대상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내용의 재검토를 요청하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의견을 받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자 권익보호·연구 부정방지 및 제재처분의 적절성 검토 등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에 의견의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재검토를 요청한 자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재검토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재검토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검토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3항의 의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재처분의 종류와 수준을 결정하여야 한다.

⑥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른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제2항 각 호의 사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른 결정의 내용을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통합정보시스템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재처분과 관련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또는 제재처분 정보공개 대상자의 사망·폐업으로 명단 공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 1. 6., 2023. 3. 21.〉

1. 기간이 5년 이상인 참여제한
2. 부과금액이 이미 지급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3배 이상인 제재부가금

⑧ 평가단과 위원회의 구성·운영, 제4항에 따른 검토의 절차, 제7항에 따른 등록 및 공개의 내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 1. 6.〉

법 제34조(제재처분의 사후관리) ①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제33조제6항에 따라 결정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참여제한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지체 없이 모든 국가연구개발활동(연구지원은 제외한다)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2조에 따라 연구개발비 환수처분 및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환수금 또는 제재부가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된 기간 내에 환수금 또는 제재부가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독촉의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시행령 제59조)
  - 참여제한 처분기준(별표 6), 제재부가금 부과기준(별표 7), 연구개발비 환수사유·기준 등
- 제재처분평가단의 구성(시행령 제60조)
  - 제재처분평가단 구성 시 제척사유 등
-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시행령 제61조)
  -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의 위원 자격·임기, 회의 운영 방식 및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유 등
- 제재처분 정보의 등록 및 공개(시행령 제62조)
  -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 및 공개해야 하는 제재처분 결정의 내용
    (제재처분 사유·내용, 제재대상자의 성명 등)
- 제재처분의 사후관리(시행령 제63조)
  - 제재부가금 및 연구개발비 환수금의 납부·분할납부·납부기한 연장 및 독촉장 발급 등

시행령 제59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이하 "참여제한"이라 한다)의 처분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이하 "제재부가금"이라 한다)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이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연구개발비를 사용한 경우 해당 연구개발기관을 대상으로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중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금액만큼 환수(이하 "연구개발비환수"라 한다)할 수 있다.

시행령 제60조(제재처분평가단의 구성)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제재처분평가단을 구성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1. 제재대상자와 「민법」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2. 제재 대상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자
3. 제재대상자와 같은 기관·단체에 소속된 사람
4. 그 밖에 평가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시행령 제61조(연구자 권익보호 등을 검토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33조 제4항에 따라 연구자 권익보호, 연구 부정방지 및 제재처분의 적절성 검토 등을 위하여 설치되는 위원회(이하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과학기술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진 사람
2.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진 사람
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사람
4.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제2항에 따라 위촉되는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⑤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의 회의는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장 및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⑥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의 회의는 제5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재검토요청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⑧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민법」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연구·증언·진술·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재직했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연구·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⑨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심의 안건의 당사자는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에게 제8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⑩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이 제8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시행령 제62조(제재처분 정보의 등록 및 공개) ① 법 제33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23. 9. 19.〉

1. 제재처분과 관련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2. 제재처분 정보공개 대상자의 사망·폐업으로 명단 공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3. 제재처분의 원인이 되는 부정행위와 관련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

② 법 제33조제7항에 따라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 및 공개해야 하는 제재처분 결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2. 28.〉

1. 제재처분의 사유 및 처분의 내용
2. 제재처분을 받은 연구개발기관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3. 제재처분을 받은 제재대상자의 성명 및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연구자 식별을 위하여 발부하는 국가연구자번호
4. 제재대상자 소속기관의 명칭 및 주소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변동된 사항을 통합정보시스템에 반영해야 한다. [제목개정 2022. 2. 28.]

시행령 제63조(제재처분 등의 사후관리) ① 제재부가금 또는 연구개발비환수를 통보받은 납부의무자는 해당 처분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1. 12. 31.〉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납부의무자에게 경영악화, 천재지변, 재해 또는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제재부가금 또는 연구개발비환수의 부과금액 전액을 한꺼번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과금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하거나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재부가금 또는 연구개발비 환수를 독촉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독촉장을 발급하여 납부의무자에게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1. 12. 31.〉

1. 체납액
2. 납부기한(독촉장을 발급한 날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3. 납부장소
4.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는 내용

(3)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 재검토 요청서 서식(시행규칙 제2조제10호)

  - 법 제33조 제3항, 시행령 제61조제7항에 따른 재검토요청서 서식(별지 제10호 서식)

〈 부 칙 〉

- '21.1.1. 이후 혁신법상 제재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검토 내용 및 절차는 혁신법에 따름

> 법 부칙 제5조(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이루어진 제3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처분에 관하여는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과학기술기본법」제11조의2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다.

※ 위 부칙 제5조에 따른 "이 법 시행 전에 이루어진"의 의미와 관련하여,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과 결과의 극히 불량 사유(법 제32조 제1항 제1호)"의 경우, "평가결과 확정일"을 의미함

2. 주요용어 정리

(1) 제재처분 주체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 제재처분의 주체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임(법 제32조제1항)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재처분 권한을 위임할 수 없으며, 다만 혁신법에 따라 일부 업무*를 전문기관이 대행하게 할 수 있음

* 제재처분평가단 구성·운영, 연구개발비 환수금 및 제재부가금 미납 시 독촉·징수(혁신법 제22조제1항)

법 제32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연구자, 연구지원인력 또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가연구개발활동(연구지원은 제외한다)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거나 이미 지급한 정부 연구개발비의 5배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다.

법 제22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9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제31조제3항, 제33조제1항, 제34조제2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중략)

* 제9조(예고 및 공모 등), 제10조(연구개발과제 및 수행 연구개발기관의 선정), 제11조(연구개발과제 협약 등), 제12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 제13조(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사용 등), 제14조(연구개발과제의 평가 등), 제15조(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제16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관리), 제17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 제18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제19조(연구개발정보의 처리 등), 제21조(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보안), 제31조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의 금지), 제33조(제재처분의 절차 및 재검토 요청 등), 제34조(제재처분의 사후처리)

법 제33조(제재처분의 절차 및 재검토 요청 등) ①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2조에 따라 제재처분을 하려는 때에는 제재대상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제재처분평가단(이하 이 조에서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제재처분의 필요성, 제재처분의 종류·수준 등 제재처분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과제가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경우에는 평가단을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중략)

법 제34조(제재처분의 사후관리)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2조에 따라 연구개발비 환수처분 및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환수금 또는 제재부가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된 기간 내에 환수금 또는 제재부가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2) 제재처분 대상자

- 제재처분의 대상자는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연구자, 연구지원인력 또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임직원임(법 제32조제1항)

  *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한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모두 제재처분 사유가 있다면, 제재처분 대상자가 될 수 있음

-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재처분을 기관과 개인 모두에게 할 것인지, 어느 한쪽에만 할 것인지 결정 할 때 사안의 경중, 위반행위의 종류, 위반행위에 대한 고의 유무, 기관과 개인의 책임비중 등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 제재처분 대상자 결정시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고, 제재처분을 통해 얻게 될 공익과 처분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 등을 비교·형량 하여 가장 적절한 자에게 책임을 부여하여야 함

  ※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제재처분 사유가 되는 행위에 대하여 관리·감독 책임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경우에 한하여 제재처분 대상자로 판단할 수 있음. 연구개발기관과 해당 위반행위 사이에 관리 책임 또는 감독 책임의 귀속이 명확하게 인정되지 않는다면, 단순히 소속 기관이라는 이유만으로 해당 비영리법인을 제재처분의 대상자로 보는 것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음

- 제재처분 대상자 결정시 귀책사유의 입증책임은 해당 사업(과제)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전문기관의 장)에게 있음

  - 중앙행정기관의 장(전문기관의 장)은 귀책사유를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이에 응해야함

  - 중앙행정기관의 장(전문기관의 장)은 제재처분 대상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해야함

- 기술료, 연구개발 성과로 인한 수익, 회수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 미납에 따른 제재처분, 연구개발비 환수처분의 경우 연구개발기관(개인사업자일 경우 대표자)을 제재처분 대상자로 함(법 제32조제1항제5호~6호, 시행령 제59조제3항)

법 제32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① 〈생략〉

5.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8조 제2항에 따른 기술료의 일부 또는 수익의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6.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 제7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회수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시행령 제59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이 사용용도와 사용 기준을 위반하여 연구개발비를 사용한 경우 해당 연구개발기관을 대상으로 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중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금액만큼 환수(이하 “연구개발비환수”라 한다)할 수 있다.

- 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준으로 참여제한 처분할 수 있으나, 제재처분을 받은 연구자나 제재처분을 받았던 기관 소속 연구책임자가 신규법인을 설립하여 대표이사 혹은 실소유주가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신규설립법인에 대한 참여제한 처분은 불가함
  - 만약, 어떤 회사가 신규법인을 설립하면서, 이전 회사의 주요자산, 장비, 시설, 거래처 등을 그대로 사용하여 사실상 형태나 내용 등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관을 설립한 경우라면 '법인격부인'의 법리에 따라 기존법인 대한 제재처분의 효력은 신규법인에 미칠 수 있음

    * 이는 제재처분을 받은 기관과 실제 동일한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등록번호를 달리하여 참여제한 효력을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함임

Q. 부정행위 등으로 연구개발기관(A기관의 부설연구원)이 제재처분을 받을 경우, A기관과 그 외 부설기관들도 제재처분 대상이 되는지

- 원칙적으로 법인격을 기준으로 제재처분을 부과하여야 하나 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준으로 참여제한을 할 수 있는 바, 해당 부설 연구원이 A기관과 독립하여 과제를 수행하였고 과제 수행당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면 A기관 또는 다른 부설기관들에 대하여는 제재처분을 하지 않을 수 있음

(3)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연구개발과제

- 국가연구개발사업이란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을 위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법 제2조제1호)
- 연구개발과제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선정평가 등 관련 절차를 통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선정하는 과제를 의미(법 제2조제2호)

> 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국가연구개발사업"이란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을 위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 2. "연구개발과제"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과제를 말한다.

(4) 참여제한

- 제재처분 귀책사유가 있는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연구자, 연구지원인력 또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사안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가연구개발활동(연구지원은 제외)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는 행정처분(법 제32조제1항)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뿐만 아니라 연구지원을 제외한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한 일련의 국가연구개발활동(법 제2조제8호 각 목)의 참여가 제한됨 ☑ p.82 | 제5장의 2. 참고

- 연구개발에 대한 수요 제출, 사전 기획 참여, 연구개발과제 수행 신청, 연구개발과제 평가단 참여 및 각 부처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등에도 참여와 활동이 제한됨

(5) 제재부가금

- 제재처분 귀책사유가 있는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연구자, 연구지원인력 또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사안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이미 지급한 정부 연구개발비의 5배의 범위에서 부과되는 금액(법 제32조제1항)

- 중앙행정기관의장은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제재부가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된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체납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법 제34조제2항) ☑ p.41-47 | 제3장의 9. 참고

> 법 제32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연구자, 연구지원인력 또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가연구개발활동(연구지원은 제외한다)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거나 이미 지급한 정부 연구개발비의 5배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다.
>
> 제34조(제재처분의 사후관리)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2조에 따라 연구개발비 환수처분 및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환수금 또는 제재부가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된 기간 내에 환수금 또는 제재부가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6) 연구개발비 회수금

- 연구개발비 환수금과 구별되는 개념으로 연구개발과제의 각 단계가 종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실시되는 정산결과 관계법령에 따라 회수하는 금액(법 제13조제7항, 시행령 제26조제5항 각호)

> 법 제13조(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사용 등) ⑦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각 단계가 종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연구개발비 정산을 실시하여야 하며, 정산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 시행령 제26조(연구개발비의 정산 등)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7항에 따른 정산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에 지급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회수해야 한다. (중략)
>
> 1. 직접비 사용 잔액(제20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사용 기준이 적용되는 학생인건비 또는 연구시설·장비비는 제외한다)

2. 제2항에 따른 정산 결과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위반하여 사용한 연구개발비 전액
3. 직접비 집행비율이 100분의 50 이하인 연구개발과제의 간접비 집행비율이 직접비 집행비율을 초과한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간접비 총액 × (간접비 집행비율 − 직접비 집행비율)

4.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협약이 해약된 경우에는 간접비 사용 잔액
5. 연구개발기관이 제19조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간접비 사용 잔액
6.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연구개발기관이 실제 부담하지 않은 금액에 상응하는 금액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7) 연구개발비 환수

- 참여제한, 제재부가금과 별도로 연구개발기관이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연구개발비를 사용한 경우 해당 연구개발기관을 대상으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중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한 금액에 대한 환수(법 제32조제3항, 시행령 제59조제3항)

※ 적발 후 제재처분 전에 사용용도와 사용기준 위반금액 전액을 반납한 경우 환수에 갈음할 수 있으며, 일부를 반납한 경우 그 차액만큼을 환수금으로 책정할 수 있음 ☑ p.83-84 | 제5장의 3. 참고

- 연구개발비 환수액은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을 위반한 금액 즉, 용도외 사용 금액을 기준으로 사유의 중대성, 위반행위의 고의 유무, 위반 횟수,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단계 및 진행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함

- 연구개발비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 위반은 부정행위로서(법 제31조 제1항 제2호) 해당 행위가 발생할 당시 제재대상자가 소속된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조사검증의 주체가 되어 해당 결과를 보고하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를 토대로 연구개발비 환수금액을 산정하여 대상자(연구개발기관)에게 부과

※ 이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혁신법 제31조 제3항 및 시행령 제57조 제5항에 따라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 위반 부정행위시 직접 조사·검증할 수 있음

● 연구개발비 환수는 현금 환수를 원칙으로 함

> 법 제32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재처분과 별도로 이미 지급한 정부 연구개발비 중 제재사유와 관련된 연구개발비를 환수할 수 있다.
>
> 시행령 제59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이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연구개발비를 사용한 경우 해당 연구개발기관을 대상으로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중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금액만큼 환수(이하 “연구개발비환수”라 한다)할 수 있다.

〈 제재부가금/회수금/환수금 비교 〉

구분	제재부가금	회수금	환수금
정의	제재처분 귀책사유 경우 정부 연구개발비의 5배의 범위에서 부과되는 금액	정산결과 관계법령에 따라 회수하는 금액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연구개발비를 사용한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중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한 금액에 대한 환수
법적근거	법 제32조제1항	법 제13조제7항, 시행령 제26조제5항 각호	법 제32조제3항, 시행령 제59조제3항
부과기준	정부 연구개발비의 5배 이내	정산 결과에 따른 금액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한 금액

(8) 부정행위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과 관련한 부정행위는 다음과 같음

- 혁신법 제31조 제1항 각호 및 혁신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각호

1.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위조·변조·표절하거나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행위	위조, 변조, 표절, 부당저자표시
	1. 위조: 존재하지 않는 연구개발자료 및 연구개발성과를 거짓으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2. 변조: 연구시설·장비, 연구재료 및 연구개발과정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개발자료 및 연구개발성과를 임의로 변형·추가·삭제함으로써 연구개발 수행의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표절: 일반적인 지식이 아닌 연구자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적절한 출처의 표시 없이 연구자 자신의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에 사용하는 행위 4.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행위: 연구개발과제 수행의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저자의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저자의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2. 제13조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와 제13조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위반한 행위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와 사용기준 위반* ※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는 법 제13조제3항, 시행령 제20조제1항, 제20조제3항, 시행령 별표 2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연구개발비의 사용기준은 법 제13조제4항, 시행령 제20조제4항,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다.
3.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하거나 제3자에게 소유하게 한 행위	연구개발성과 소유 관련규정 위반
4. 제21조제1항에 따른 보안대책을 위반하거나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보안사항을 누설하거나 유출하는 행위	보안대책 위반,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 보안사항의 국내외 유출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거나 이를 수행하는 행위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 신청 및 수행
6.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활동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포괄규정
	1.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 제보자에 대한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증·조치 및 조사의 공정성·객관성을 해치는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신분상의 불이익 조치 나. 위협·협박 2. 연구개발비 사용의 건전성을 해치는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제24조제3항에 따른 증명자료의 위조·변조 나. 제25조제1항에 따른 사용내역의 거짓보고

	3.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 4.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해당하는 행위

*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은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에 적합한 집행을 포함하므로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위반'의 경우에는 '연구개발비 사용기준'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사용용도 위반이자 사용기준 위반인 경우 예시) 연구과제 수행과 무관한 물품을 구매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연구과제 수행을 위해 사용 한 것처럼 비용 처리하는 경우 → 제재처분의 대상
(사용기준 위반이지만 사용용도 위반은 아닌 경우 예시) 사전승인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사전승인 없이 연구개발장비를 변경·취득한 경우 → 연구개발비 회수조치의 대상

3. 혁신법에 따라 변경된 제재처분 주요내용

(1) 제재처분 적용범위(혁신법 매뉴얼 본권 p.32~35 참조)

- 모든 국가연구개발사업(법 제3조 각호 또는 제4조에 해당하는 사업 포함)에 대하여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의 제재처분 관련 규정이 적용됨
  - 실무적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예산 편성 시 '연구개발사업(R&D)'으로 분류되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주요R&D) 또는 기획재정부(일반R&D) 심의를 받는 세부사업을 의미함
  - 예산 중 일부를 연구개발 예산으로 분류하는 사업*의 경우 내역사업 또는 세부 내용에서 연구개발 내용이 구분되지 않으면 사업 전체에 대해 동 규정을 적용
    * 대학혁신지원(교육부), 과학기술원 연구운영비(과기정통부), 농림축산검역본부 기본경비(농식품부), 질병관리청 기본경비(질병청) 등
  - 지방자치단체 자체 재원으로 독자적으로 지원하는 연구개발사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해당되지 않으나, 국비에 매칭하여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혁신법 적용 여부는 사업 추진 방식에 따라 개별적으로 검토할 필요
  - 다만, 혁신법 제3조 및 제4조에서 적용의 예외를 인정하는 사업의 경우, 해당 조항(제3조 각호 사업의 경우 제9조부터 제18조까지, 제4호 사업의 경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제14조 및 제15조)과 관련된 제재처분 규정에 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법 제3조(적용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하여는 제9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중앙행정기관(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이 소관 업무를 위하여 직접 수행하는 사업
2. 정부가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기관·단체와 체결한 협정·조약 등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납부하여 추진하는 사업
3.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안과제로 구성된 국방 분야의 사업
4.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
5. 전문기관의 업무 대행 및 제38조에 따라 위탁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6. 「학술진흥법」에 따른 학술지원사업 중 인문사회 분야
7. 「학술진흥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대학을 지원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제9조(예고 및 공모 등), 제10조(연구개발과제 및 수행 연구개발기관의 선정), 제11조(연구개발과제 협약 등), 제12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 제13조(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사용 등), 제14조(연구개발과제의 평가 등), 제15조(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제16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관리), 제17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 제18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의 기본사업(정관에

따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가 직접 출연한 예산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의 경우에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제14조 및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다른 법률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한다. 〈개정 2022. 1. 6.〉

1. 삭제 〈2022. 1. 6.〉
2. 삭제 〈2022. 1. 6.〉
3. 삭제 〈2022. 1. 6.〉

시행령 제5조(적용범위) 법 제3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교육부 장관과 협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을 말한다.

1. 「학술진흥법」 제7조에 따른 학문후속세대의 육성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
2. 「고등교육법」 제7조에 따른 재원 지원 및 보조를 위한 고등교육 재정지원 사업
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에 따른 산학연협력 촉진을 위한 지원 사업

- 혁신법 제4조 단서의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은 법률에 명칭과 설립 근거가 있는 기관* 및 그 부설기관을 의미함

  * 예시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과학기술원

-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보조금*으로 편성된 국가연구개발사업도 혁신법 제재처분 규정을 적용

  * 320-01목(민간경상보조), 320-07목(민간자본보조), 330-01목(자치단체경상보조), 330-03목(자치단체 자본보조)

(2) 제재처분 제척기간 도입

- 제재처분은 해당 제재처분 사유가 발생한 연구개발과제의 종료일 또는 해당 제재처분 사유가 발생한 국가연구개발활동의 종료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제재처분을 할 수 없음

법 제32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⑤ 제1항에 따른 제재처분은 그 제재사유가 발생한 연구개발과제의 종료일 또는 그 제재사유가 발생한 국가연구개발활동의 종료일부터 10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 혁신법 부칙 제5조에 따를 때 '21.1.1이후 발생한 제재처분 사유 행위에 대해 혁신법이 적용되는 것이나, 제척기간*은 절차적인 부분으로서 제재대상자에 유리함을 고려하여 '21.1.1이전에 발생한 행위에 대해서도 혁신법을 우선적용 할 수 있음 ☑ p.81 | 제5장의 1. 참고

  * 제척기간이란, '어떤 권리에 대하여 법률이 예정하는 존속기간'으로서, 제재처분의 경우 행정청이 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 기한을 말함(행정기본법 제23조 제1항 참조). 제척기간이 도과된 후에 이루어진 제재처분은 무효임(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3두1752 판결 참조)

- (제척기간의 기산점) ① 연구개발과제의 종료일과 ② 국가연구개발활동의 종료일 중 시간적으로 우선하는 것을 제척기간의 기산점으로 보아 두 기간 중 어느 하나의 기간이 먼저 도래하면 제척기간은 만료됨

- 제척기간 만료 전까지 제재처분의 확정통보가 이루어져야 하며, 제재처분절차 진행 중에 제척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제재처분은 불가함

(3) 제재처분 사유의 변경 등

- (제재처분 사유의 변경)
  - 종전의 '연구결과 불량'은 혁신법 에서 '연구과정' 및 '연구결과' 모두의 극히 불량을 포함하는 사유로 변경됨
  - 종전의 '연구비용도 위반'은 혁신법에서 연구비의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 모두의 위반을 포함하는 사유로 변경됨

    ※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는 법 제13조 제3항,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20조 제3항, 시행령 별표 2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연구개발비의 사용기준은 법 제13조 제4항, 시행령 제20조 제4항,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음

- (제재처분 사유의 추가)
  - 혁신법에서는 위조·변조·표절·부당저자표시 등의 연구부정행위를 별도로 명시
  - 혁신법에서는 조사방해행위, 연구비 허위증빙·거짓 보고 등 제재처분 사유 신설

- (제재처분 사유의 제외)
  - 혁신법에서 연구개발비 환수금 미납은 제재처분 사유에서 제외됨

    ※ 혁신법에서는 기술료 및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미납, 연구개발비 회수금액 미납의 경우는 참여제한 처분이 부과되고, 연구개발비 환수금 미납, 제재부가금 미납의 경우는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함
    ☑ p.41-47 | 제3장의 9. 참고

〈 제재처분 사유의 변경 등 〉

<table>
<tr><th colspan="2">《 종전 》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각호</th><th colspan="3">《 변경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 제1항 각호</th></tr>
<tr><td>1호</td><td>연구결과 극히 불량</td><td>1호</td><td colspan="2">수행과정과 결과 모두 극히 불량</td></tr>
<tr><td>8호</td><td>협약 위반</td><td>2호</td><td colspan="2">법령 및 협약불이행으로 인한 과제의 변경 또는 중단</td></tr>
<tr><td></td><td></td><td rowspan="4">3호</td><td colspan="2">〈 제31조 제1항 각호(부정행위*) 〉</td></tr>
<tr><td colspan="2"></td><td>1</td><td>위조·변조·표절 및 부당한 저자표시</td></tr>
<tr><td>5호</td><td>연구개발비 사용용도 위반</td><td>2</td><td>연구개발비 사용용도와 사용기준 모두 위반</td></tr>
<tr><td>6호</td><td>지식재산권의 개인명의 출원 및 등록</td><td>3</td><td>성과소유 규정위반</td></tr>
</table>

<table>
<tr><th colspan="2">〈 종전 〉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각호</th><th colspan="3">〈 변경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 제1항 각호</th></tr>
<tr><td>2호</td><td>연구개발 내용 국내외 누설 및 유출</td><td rowspan="10"></td><td rowspan="3">4</td><td colspan="2">보안대책 위반</td></tr>
<tr><td rowspan="2">7호</td><td rowspan="2">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또는 수행</td><td>국내</td><td>보안사항 국내 누설 및 유출</td></tr>
<tr><td>국외</td><td>보안사항 국외 누설 및 유출</td></tr>
<tr><td>5</td><td colspan="2">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또는 수행</td></tr>
<tr><td colspan="2" rowspan="5"></td><td rowspan="5">6</td><td colspan="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시행령 제56조 제1항 각호)</td></tr>
<tr><td>①</td><td>부정행위 조사 등 방해행위</td></tr>
<tr><td>②</td><td>연구비 사용 건전성 저해 행위</td></tr>
<tr><td>③</td><td>생명윤리 위반</td></tr>
<tr><td>④</td><td>연구실 안전 위반</td></tr>
<tr><td>3호</td><td>연구개발과제 수행포기</td><td>4호</td><td colspan="3">연구개발과제 수행포기</td></tr>
<tr><td>4호</td><td>기술료 미납</td><td>5호</td><td colspan="3">기술료 미납 및 연구개발 성과수익 미납</td></tr>
<tr><td colspan="2"></td><td>6호</td><td colspan="3">회수금 미납</td></tr>
<tr><td>4의2호</td><td>환수금 미납</td><td colspan="4"></td></tr>
</table>

* ’21년 이전의 「기본법」 체계에서는 위·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표시 등을 ‘연구 부정행위’로 명명하였으나, ’21년 이후 「혁신법」에서는 제31조 제1항 각 호의 행위 전체를 ‘부정행위’로 명명

Q. 참여제한으로 인해 기관(기업)이 수행중인 과제가 중단 되는 경우, 혁신법에 따라 과제중단으로 인한 제재처분이 동반되는지?

- 타 과제 참여제한 처분으로 인해 혁신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가 변경 또는 중단된 경우는 혁신법 제3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참여제한 처분의 대상은 아님

Q. 혁신법에서는 환수금 미납을 제재사유에서 제외하였으며, 부칙 제5조에서는 “이 법 시행 전에 이루어진 제3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처분에 관하여는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과학기술기본법」제11조의2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다”고 규정함. 그렇다면 2021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환수금 미납은 제재가 가능한 것인지

- 혁신법 부칙 제5조에 따라, 법 시행일(’21.1.1) 이전에 발생한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 법(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제재처분사유 해당 여부 및 제재처분의 내용 등을 정해야 함
- 21.1.1. 이전 환수금 미납이 발생하여 이를 제재처분 하는 경우,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제재할 수 있음

(4) 제재처분의 종류 및 참여제한 기간·범위 조정

- 제재처분이란 참여제한 및 제재부가금을 의미함 ☑ p.11-12| 제2장의 2. (4)·(5) 참고
  - 제재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재대상자에게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가연구개발활동(연구 지원은 제외)에 대한 참여제한 또는 이미 지급한 정부 연구개발비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 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음(법 제32조제1항)
  - 참여제한 기간이 과제별로 10년(과학기술기본법 상 5년 이내)이내의 범위로 상향되었으며 연구개발뿐만 아니라 연구지원을 제외한 평가위원으로 활동 등 국가연구개발활동(법 제2조제8호 각목) 전반에 대해 참여가 제한됨
  - 참여제한 처분과 제재부가금 부과금 부과 처분은 하나의 제재처분만으로도 실효성이 있는 경우 병과하지 않을 수 있음(법 제32조제2항)

Q. 혁신법 제34조에서 "(연구지원은 제외한다)"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 연구지원이란 '연구개발기관이 소속 연구자가 연구개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과제의 신청·수행 및 성과활용 등에 필요한 인력, 시설·장비, 전산시스템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의미함 (혁신법 제2조제7호)
  * 참여제한 처분을 받은 기관이 연구개발과제에 연구지원만을 위하여 참여하는 것은 불가능
- 참여제한 처분을 받았더라도 '연구지원'행위는 할 수 있으므로, 해당 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에 연구지원인력으로 참여하는 것은 가능함

- 연구개발비 환수는 제재처분과 유사하지만 제재처분과 구별되는 별도의 처분
  - 혁신법에 근거한 제재처분의 종류에서는 제외되었지만, 실질적으로 조치의 효과 등을 고려 시 행정기관의 행정행위로서 처분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봄 ☑ p.13| 제2장의 2. (7) 참고
  - 따라서, '환수' 조치를 결정한 경우에도 제재처분과 마찬가지로 사전통지 및 이의신청, 이에 따른 확정통보의 절차를 동일하게 따라야 하며, 통합정보시스템에 관련 정보도 등록·관리하여야함

    ※ 연구개발비 환수는 기존 제재조치를 규정한 법령(과학기술기본법)에서는 제재조치의 하나였음
  - 연구개발비 환수처분 사유와 제재부가금 부과처분 사유가 대조적으로 조정됨

구분	(종전) 과학기술법상 제재처분 사유	(변경) 연구개발혁신법상 제재처분 사유
연구개발비 환수	모든 사유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와 사용기준 위반
제재부과금 부과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 위반	모든 사유

법 제32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연구자, 연구지원인력 또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가연구개발활동(연구지원은 제외한다)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거나 이미 지급한 정부 연구개발비의 5배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 처분이나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은 병과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재처분과 별도로 이미 지급한 정부 연구개발비 중 제재사유와 관련된 연구개발비를 환수할 수 있다.

〈 참 고 〉 국가연구개발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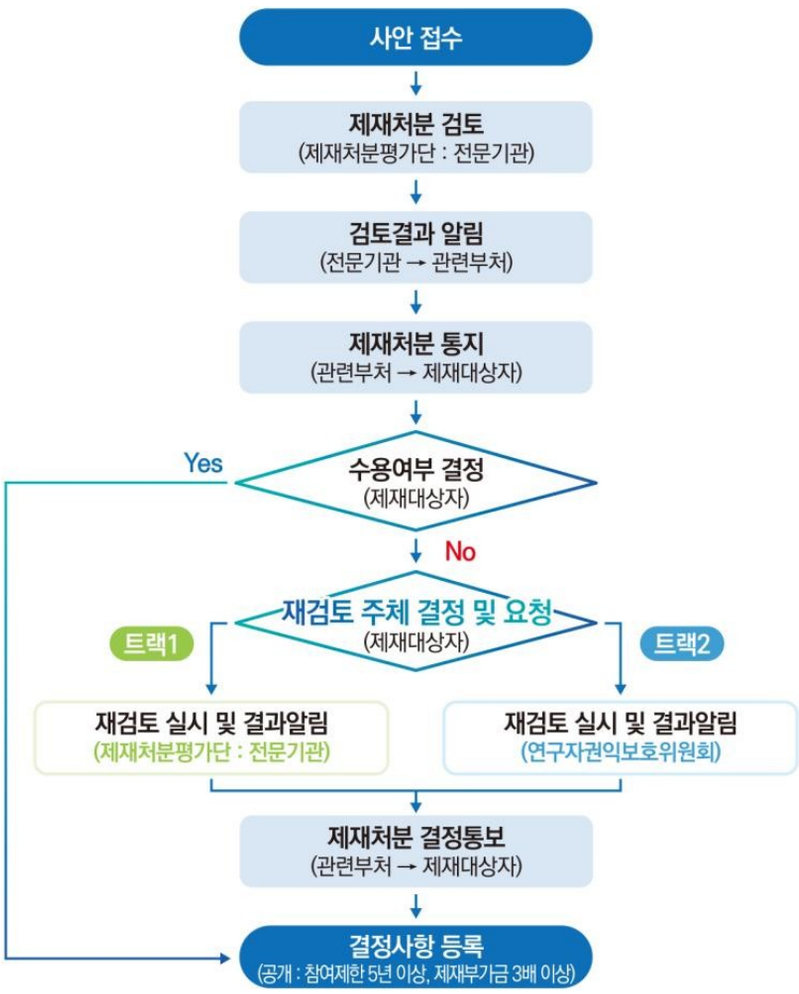
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국가연구개발활동”이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연구지원 및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 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한 연구개발 관련 수요조사에 수요를 제출하는 행위
   - 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및 연구개발과제의 발굴을 위한 사전 기획에 참여하는 행위
   - 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공모에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신청하는 행위
   - 라. 연구개발과제의 원활한 수행 및 관리를 위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구성하여 운영하는 평가단, 위원회, 심의위원회 등에 참여하거나 활동하는 행위

(5) 제재처분의 재검토를 위한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신설

- 사전통지된 제재처분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제재대상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통하여 제3의 기관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 위원회(이하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에 해당 처분의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는 절차 신설 ☑ p.30 | 제3장의 4. 참고

[혁신법 상 제재처분 순서도]



법 제33조(제재처분의 절차 및 재검토 요청 등)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된 제재처분의 내용(이하 이 조에서 "통지내용"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제재대상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내용의 재검토를 요청하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의견을 받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자 권익보호·연구 부정방지 및 제재처분의 적절성 검토 등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에 의견의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재검토를 요청한 자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재검토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재검토를 실시할 수 있다. (중략)

(6) 제재처분 공개

- 제재처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최종 확정 통보한 내용을 모두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며
  - 이 중 제재대상자가 받은 단일 제재처분에서 5년 이상의 참여제한을 받았거나 제재부가금 부과액이 이미 지급한 정부연구개발비의 3배 이상으로 처분된 경우는 이를 공개하여야함 (법 제33조 제7항, 시행령 제 62조)

※ 제재처분의 공개는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시점부터 6개월간 공개

법 제33조(제재처분의 절차 및 재검토 요청 등) ⑦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른 결정의 내용을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통합정보시스템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재처분과 관련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또는 제재처분 정보공개 대상자의 사망·폐업으로 명단 공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 1. 6., 2023. 3. 21.〉

1. 기간이 5년 이상인 참여제한
2. 부과금액이 이미 지급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3배 이상인 제재부가금

⑧ 평가단과 위원회의 구성·운영, 제4항에 따른 검토의 절차, 제7항에 따른 등록 및 공개의 내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62조(제재처분 정보의 등록 및 공개) ① 법 제33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23. 9.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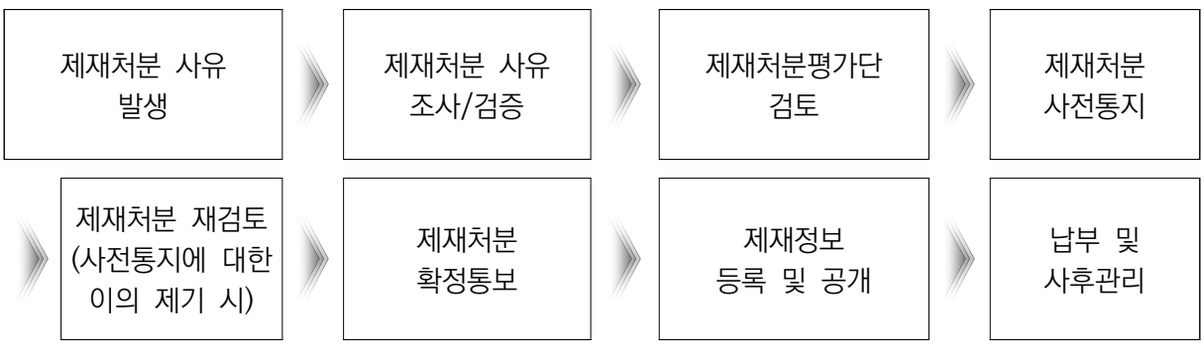
1. 제재처분과 관련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2. 제재처분 정보공개 대상자의 사망·폐업으로 명단 공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3. 제재처분의 원인이 되는 부정행위와 관련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

② 법 제33조제7항에 따라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 및 공개해야 하는 제재처분 결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재처분의 사유 및 처분의 내용
2. 제재처분을 받은 연구개발기관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3. 제재처분을 받은 제재대상자의 성명 및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연구자 식별을 위하여 발부하는 국가연구자번호
4. 제재대상자 소속기관의 명칭 및 주소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변동된 사항을 통합정보시스템에 반영해야 한다.

제3장 제재처분 절차



1. 제재처분 사유 발생에 따른 조사·검증 및 보고

(1) 부정행위의 경우(법 제31조제1항 각호 규정)

-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소속 연구자 또는 연구지원인력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자체규정에 따라 부정행위를 조사·검증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이에 대한 결과를 소관 중앙행정 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함(법 제31조제2항, 시행령 제57조)

	부정행위(혁신법 제31조 제1항)
1호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위조·변조·표절하거나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행위
2호	제13조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와 제13조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위반한 행위
3호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하거나 제3자에게 소유하게 한 행위
4호	제21조제1항에 따른 보안대책을 위반하거나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보안사항을 누설하거나 유출하는 행위
5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거나 이를 수행하는 행위
6호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활동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법 제31조(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의 금지)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소속 연구자 또는 연구지원인력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검증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56조(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 ① 법 제31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 제보자에 대한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증·조치 및 조사의 공정성·객관성을 해치는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신분상의 불이익 조치
   나. 위협·협박
2. 연구개발비 사용의 건전성을 해치는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제24조제3항에 따른 증명자료의 위조·변조
   나. 제25조제1항에 따른 사용내역의 거짓 보고
3.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
4.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해당하는 행위

② 법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정행위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조: 존재하지 않는 연구개발자료 및 연구개발성과를 거짓으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2. 변조: 연구시설·장비, 연구재료 및 연구개발과정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개발자료 및 연구개발성과를 임의로 변형·추가·삭제함으로써 연구개발 수행의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표절: 일반적인 지식이 아닌 연구자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적절한 출처의 표시 없이 연구자 자신의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에 사용하는 행위
4.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행위: 연구개발과제 수행의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저자의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저자의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시행령 제57조(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등)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부정행위의 검증·조치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체규정(이하 이 조에서 “자체규정”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운영해야 한다.

1. 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방법
2. 부정행위 증명을 위한 조사의 절차 및 방법
3. 부정행위 증명을 위한 조사의 결과 통보·보고에 관한 사항
4. 부정행위 제보자에 대한 신변보호 및 조사대상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부정행위로 의심되는 행위를 자체규정에 따라 검증하여 부정행위로 판단한 경우로서 부정행위자가 그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경우에는 그 부정행위자를 징계할 수 있으며, 부정행위자가 그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부정행위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검증·조치의 결과가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문서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의 자체 조사·검증이 불가능한 부득이한 사유 등이 있는 경우 부정행위를 조사·검증 할 수 있음(법 제31조 제3항 각호, 시행령 제57조 제5항 각호)

> 법 제31조(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의 금지)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다수이면 공동으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 1.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의 자체적인 검증·조치가 불가능한 경우
> 2. 제2항에 따른 보고 내용의 합리성과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3. 그 밖에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 시행령 제57조(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등) ⑤ 법 제31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
> 1. 법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행위를 조사하는 경우
> 2.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연구자 또는 연구지원인력의 부정행위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기한 내에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검증 등을 하지 않은 경우

(2) 그 외의 경우(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4~6호)

- 법 제31조제1항 각호에서 규정한 부정행위 이외의 제재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사안은 조사·검증 없더라도 제재처분평가단을 통해 제재처분 여부 및 내용을 검토할 수 있음

	부정행위(법 제31조제1항) 외의 제재처분 사유(법 제32조제1항)
1호	제12조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과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2호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이 법 또는 협약에 따른 의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제15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가 변경 또는 중단된 경우
4호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5호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8조제2항에 따른 기술료의 일부 또는 수익의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6호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제7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회수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제재처분 평가단 검토

(1) 제재처분 평가단 구성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재처분을 하려고 할 때에는 제재처분평가단을 구성·운영하여 제재처분의 필요성, 종류, 수준 등을 검토해야함(법 제33조제1항)

  ※ 연구개발과제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경우 평가단을 구성하지 아니 할 수 있음

  - 제재처분평가단의 구성·운영은 전문기관이 대행할 수 있음(법 제22조 제1항)

> 법 제33조(제재처분의 절차 및 재검토 요청 등) ①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2조에 따라 제재처분을 하려는 때에는 제재대상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제재처분평가단(이하 이 조에서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제재처분의 필요성, 제재처분의 종류·수준 등 제재처분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과제가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경우에는 평가단을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재처분평가단 구성 시 이해관계자 등을 배제함으로써 공정성을 확보해야함

> 시행령 제60조(제재처분평가단의 구성)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제재처분평가단을 구성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
> 1. 제재대상자와 「민법」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 2. 제재 대상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자
> 3. 제재대상자와 같은 기관·단체에 소속된 사람
> 4. 그 밖에 평가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 각 부처는 제재처분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재사유 등을 고려하여 관련 과학기술분야, 법률분야, 회계분야 등의 전문가가 포함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2) 제재처분 평가단 역할

- 제재처분평가단은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제재대상자를 결정하고, 제재처분 사유의 중대성, 위반행위의 고의 유무, 위반 횟수,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단계 및 진행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제재처분의 필요성, 제재처분의 종류·수준 등 제재처분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해야함

- 제재심의 안건에 대해 제재처분평가단 위원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여야 함

  ※ 제재심의 안건은 제재처분평가단 위원이 사실관계, 관련판례, 유사 처분사례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할 수 있도록 제재심의가 열리는 날로부터 최소 2일 전에 위원에게 제공하고 이 경우 제재심의 안건의 보안을 위해 전문기관이 안건의 개요 또는 심의 자료를 제공하기 전에 보안서약서를 받을 것을 권장함

3. 제재처분 사전통지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재처분 평가단이 검토한 결과를 고려하여 관련자*에게 각각 개별적으로 제재처분의 내용 등 「행정절차법」제21조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미리 통지하여야 함 (법 제33조제2항 각호)

* 제재대상자, 제재대상자의 소속 기관의 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는 제재대상자가 현재 수행하고 있는 '해당과제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포함되어야 함

법 제33조(제재처분의 절차 및 재검토 요청 등) ②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평가단이 검토한 결과를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제재처분의 내용 등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1. 제재대상자
2. 제재대상자의 소속 기관의 장
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제목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4.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6. 의견제출기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사전통지의 방식은 본 가이드라인 제3장 6. 사전통지 및 확정통보의 방식 참고

4. 제재처분 재검토 ☑ p.22-23 | 제2장의 3. (5) 참고

- 사전 통지된 제재처분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제재대상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내용의 재검토를 요청하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법 제33조제3항)
- 재검토요청서 양식은 시행규칙 별지서식 제10호에 따름
- 재검토 요청을 받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재대상자가 위원회 검토를 요청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에 검토를 요청하여야함
  - 다만 재검토를 요청한 제재대상자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재검토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연구자 권익보호위원회가 아닌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재검토를 실시할 수 있음(법 제33조제4항)

> 법 제33조(제재처분의 절차 및 재검토 요청 등)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된 제재처분의 내용(이하 이 조에서 “통지내용”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제재대상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내용의 재검토를 요청하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라 의견을 받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자 권익보호·연구 부정방지 및 제재처분의 적절성 검토 등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에 의견의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재검토를 요청한 자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재검토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재검토를 실시할 수 있다.

〈 참 고 : 재검토요청서 서식 〉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재검토요청서

※ 뒤쪽의 작성 요령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접수번호란과 접수일란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요청인	성명 또는 기관명		
	주소(직장 또는 자택)		
	국가연구자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및 법인등록번호		
	휴대전화 / 직장전화		
	전자우편		
[ ] 대표자 [ ] 대리인	성명		
	주소(직장 또는 자택)		
	소속		
	휴대전화 / 직장전화		
	전자우편		
소관 중앙행정기관명			
사전통지 문서명			
사전통지를 통보받은 날	0000. 00. 00.		

제재처분 재검토 요청 내용	요청인	제재처분의 내용		
		참여제한(년,개월)	제재부가금(원)	환수금(원)

재검토 요청취지	
재검토 요청사유	
증거 서류	
재검토 희망 기관(택일)	□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3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0호에 따라 위와 같이 제재처분 및 환수 사전통지 내용의 재검토를 요청하는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요청인 (인 또는 직인)

중앙행정기관의 장 귀하

처리 절차

재검토요청서 작성	→	재검토요청서 접수 및 의견검토 요청	→	재검토 실시	→	처분 및 통보
요청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뒤쪽)

작성 요령(작성 요령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1. 요청인
   1) 성명 또는 기관명: 재검토요청서를 제출하는 당사자의 성명 또는 연구개발기관명을 기재합니다.
   ※ 대표 요청인(또는 기관)의 정보를 작성합니다. 전체 재검토요청인 명단은 하단의"제재처분 재검토 요청 내용"에 작성합니다.
   2) 주소: 요청인의 거주지(자택, 직장 모두 가능) 또는 소재지 주소를 기재합니다.
   3) 국가연구자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및 법인등록번호
   - 국가연구자번호: 대표 요청인이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 등 개인의 경우 기재
   - 사업자등록번호 및 법인등록번호 : 대표 요청인이 연구개발기관(비영리/영리기관)일 경우 사업자등록번호와 법인등록번호 모두 기재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 요청인이 개인사업자일 경우 법인등록번호가 없으므로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
   4) 휴대전화 / 직장전화: 재검토회의 일정 등을 안내받을 수 있는 연락 가능한 휴대전화 또는 직장전화 번호를 기재합니다.
   5) 전자우편: 재검토회의 일정 등을 안내 받을 수 있는 현재 사용 중인 전자우편 주소를 기재합니다.
   ※ 해당 휴대전화 및 전자우편으로 관련 연락이 송부되므로, 반드시 확인 가능한 연락처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대표자, 대리인
   1) 대표자: 요청인이 연구개발기관일 경우 기관의 대표자 정보를 기재합니다.
   2) 대리인: 요청인이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대리인 정보를 기재합니다.
   ※ 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자격을 소명하는 증거서류(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만 제출)를 하단 증거서류 목록에 기재 후 제출합니다.
3. 소관 중앙행정기관명: 제재처분을 사전통지 한 중앙행정기관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4. 사전통지 문서명: 제재처분 사전통지 문서의 제목을 기재합니다.
5. 사전통지를 통보받은 날: 제재처분 사전통지 문서가 제출인에게 도달한 날을 기재합니다.
6. 제재처분 재검토 요청내용: 재검토를 요청하려는 처분내용을 제재처분 사전통지서에 따라 명확하게 기재하고, 요청인이 기관,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 다수일 경우 표 안에 행을 추가하여 재검토요청인 별 제재처분 및 환수금을 구분하여 요청내용을 모두 작성합니다.

   예) 재검토요청인이 기관,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 다수인 경우

요청인	사전통지 제재처분 및 환수 내용		
	참여제한(년, 개월)	제재부가금(원)	환수금(원)
연구개발기관 000	0년	0,000,000	0,000,000
대표자 000	0년	0,000,000	0,000,000
연구책임자 000	0년	0,000,000	0,000,000

7. 재검토 요청취지: 예) 00부에서 0000년 00월 00일에 사전통지한 참여제한 0년과 제재부가금 000원의 면제(또는 감경)를 요청합니다.
8. 재검토 요청사유: 사전통지된 제재처분에 대하여 재검토 요청 의견을 제출하게 된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하되, 별지를 추가하여 작성 가능합니다.
9. 증거 서류: 1) 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자격을 소명하는 서류(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만 제출), 2) 재검토 요청 의견 및 사유를 뒷받침하는 증거서류 · 증거물, 1)과 2)의 서류 제목 또는 명칭을 나열하여 작성합니다.
10. 재검토 희망 기관: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와 소관 중앙행정기관 중 요청인이 재검토를 희망하는 기관을 선택합니다.
11. 직인날인 : 요청인의 서명 또는 직인을 날인하되, 재검토요청인이 다수(개인과 기관 등)일 경우 각각의 서명 또는 직인을 모두 날인하여야 합니다.

    예) 사전통지 받은 대상이 연구책임자, 기업대표자, 대학교 산학협력단이지만 재검토요청서에 연구책임자와 기업대표자만 서명 날인하여 제출한 경우 재검토요청을 연구책임자와 기업대표자만 신청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예시〉 제재처분 재검토요청서 작성 예시

- 연구책임자 홍길동 참여제한 2년, 연구개발기관 A대학 제재부가금 3백만원에 대해 연구책임자가 대표로 재검토 요청하는 경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재검토요청서

※ 뒤쪽의 작성 요령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접수번호란과 접수일란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요청인	성명 또는 기관명	*홍길동*		
	주소(직장 또는 자택)	*○○도 ○○시 ○○길 123*		
	국가연구자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및 법인등록번호	*1234567*		
	휴대전화 / 직장전화	*010-123-4567*		
	전자우편	*abc@korea.kr*		
[ ] 대표자 [ ] 대리인	성명	*홍길동*		
	주소(직장 또는 자택)	*○○도 ○○시 ○○길 123*		
	소속	*A 대학교*		
	휴대전화 / 직장전화	*010-123-4567*		
	전자우편	*abc@korea.kr*		
소관 중앙행정기관명	*○○부*			
사전통지 문서명	*○○○○사업 ○○○○과제 제재처분 사전 통지 안내*			
사전통지를 통보받은 날	*○○○○. ○○. ○○.*			
제재처분 재검토 요청 내용	요청인	제재처분의 내용		
		참여제한(년,개월)	제재부가금(원)	환수금(원)
	홍길동	*2*	-	-
	A 대학교	-	*3,000,000*	-
재검토 요청취지	*○○부에서 ○○○○. ○○. ○○. 사전통지한 홍길동의 참여제한 2년과 A대학교의 제재부가금 3,000,000만원 면제를 요청합니다.*			
재검토 요청사유	별지로 작성			
증거 서류	*1. 증거서류(가) 2. 증거서류(나)*			
재검토 희망 기관(택일)	□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3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0호에 따라 위와 같이 제재처분 및 환수 사전통지 내용의 재검토를 요청하는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요청인 (인 또는 직인)

중앙행정기관의 장 귀하

5. 확정통보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재검토 요청이 있었던 경우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의 재검토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재대상자로부터 재검토 요청 의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제재처분의 종류와 수준을 결정하고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련자*에게 각각 통보해야함(법 제33조제5항~6항)

  ☑ p.22-23 | 제2장의 3. (5) 참고

  * 제재대상자, 제재대상자의 소속 기관의 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는 제재대상자가 현재 수행하고 있는 '해당과제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법 제33조 제4항에 따라 제재대상자가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에 제재처분 재검토를 요청한 경우)이 포함되어야 함

- 확정통보의 내용과 방식은 6. 사전통지 및 확정통보의 방식 참고

- 사전통지와 확정통보는 구별되는 행정절차로서 확정통보를 인지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법 제33조(제재처분의 절차 및 재검토 요청 등) ⑤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검토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3항의 의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재처분의 종류와 수준을 결정하여야 한다. ⑥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른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제2항 각호의 사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6. 사전통지 및 확정통보의 방식 : 처분효력의 발생

- 제재처분의 사전통지 및 확정통보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등의 동의가 있어야 함. 다만,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말, 전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 전송, 팩스 또는 전자우편 등 문서가 아닌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음.(행정절차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

  - 문서에는 처분 행정청과 담당자의 소속·성명 및 연락처(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 주소 등)를 적어야 함(행정절차법 제24조제3항)

  - 공문표지에 처분의 근거, 참여제한·환수 및 제재부가금 대상자 특정, 처분 이유 및 사유, 불복절차 안내 등의 사항을 기재함(행정절차법 제23조제1항 및 제26조)

> 행정절차법 제23조(처분의 이유 제시) ①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 1.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
> 2. 단순·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 3.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중략)

행정절차법 제24조(처분의 방식) ①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개정 2022. 1. 11.〉

1. 당사자등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당사자가 전자문서로 처분을 신청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말, 전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 전송, 팩스 또는 전자우편 등 문서가 아닌 방법으로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가 요청하면 지체 없이 처분에 관한 문서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22. 1. 11.〉

③ 처분을 하는 문서에는 그 처분 행정청과 담당자의 소속·성명 및 연락처(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22. 1. 11.〉

행정절차법 제26조(고지)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그 밖에 불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1) 문서 송달의 방식

- 문서 송달은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가능함
- 송달하는 문서의 명칭, 송달받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발송방법 및 발송 연월일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보존하여야 함(행정절차법 제14조제6항)
- 교부 송달
  - 송달 받을 자(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거소(居所)·영업소·사무소. 다만, 송달 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를 만나는 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음(행정절차법 제14조제1항)
  - 수령확인서를 받고 문서를 교부함으로써 하며, 송달하는 장소에서 송달 받을 자를 만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무원·피용자(被傭者)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사무원등“이라 한다)에게 문서를 교부할 수 있음. 다만, 문서를 송달 받을 자 또는 그 사무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수령확인서에 적고, 문서를 송달할 장소에 놓아둘 수 있음(행정절차법 제14조제2항)

- 전자통신망을 통한 송달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은 송달 받을 자가 송달 받을 전자우편주소 등을 지정하여야 함(행정절차법 제14조제3항)
  - 전자우편주소를 통한 발송 또는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한 전자문서 발송이 가능하도록 협약 내용에 적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전자우편주소 등을 수집하므로 개인정보이용 동의서가 필요함
  - 전자통신망을 통한 송달의 경우 사업관리시스템 미확인 등의 상황을 줄이기 위하여 SMS(문자 메시지),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공문 확인을 안내하는 것이 필요함. 가능한 우편송달을 함께 하는 것을 권고함
- 공시송달
  - 송달 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송달 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함(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① 송달은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하되, 송달받을 자(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거소(居所)·영업소·사무소 또는 전자우편주소(이하 "주소등"이라 한다)로 한다. 다만, 송달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를 만나는 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다.
② 교부에 의한 송달은 수령확인서를 받고 문서를 교부함으로써 하며, 송달하는 장소에서 송달받을 자를 만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무원·피용자(被傭者)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사무원등"이라 한다)에게 문서를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문서를 송달받을 자 또는 그 사무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수령확인서에 적고, 문서를 송달할 장소에 놓아둘 수 있다.
③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은 송달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한다. 이 경우 송달받을 자는 송달받을 전자우편주소 등을 지정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한다.
1. 송달받을 자의 주소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⑤ 제4항에 따른 공고를 할 때에는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등 송달받을 자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 11.〉
⑥ 행정청은 송달하는 문서의 명칭, 송달받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발송방법 및 발송 연월일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11.〉

(2) 송달의 효력 발생

- 송달은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문서가 송달 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함
-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송달하는 경우에는 송달 받을 자가 지정한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에 도달된 것으로 봄

  * 행정처분의 효력발생요건으로서의 도달이란 처분상대방이 처분서의 내용을 현실적으로 알았을 필요까지는 없고 처분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임으로써 충분하므로(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두60577 판결 참조), 전자송달방법으로 제재처분서를 송달할 경우에는 전자우편주소에 입력이 된 때에 동시에 도달된 것인바, 송달받을 자가 이를 확인하고 열어보아 내용을 확인하지 아니하더라도 도달의 효력이 발생함

- 공시송달을 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 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함. 다만,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어 효력 발생 시기를 달리 정하여 공고한 경우에는 그에 따름
  - 제재처분의 송달은 처분서가 처분대상자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발생하므로, 참여 제한의 기산일은 확정통보서가 도달한 날 다음날로 보아야 함(행정절차법 제15조 제1항)
  - 다만, 만약 송달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함(행정절차법 제15조 제3항)
  - 공시송달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함

>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① 송달은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문서가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 ② 제14조제3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송달하는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에 도달된 것으로 본다.
> ③ 제14조제4항의 경우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어 효력 발생 시기를 달리 정하여 공고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7. 제재정보 등록 및 공개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확정 통보한 내용을 모두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며 이 중 5년 이상의 참여제한 또는 3배 이상의 제재부가금 처분에 대해서는 이를 공개하여야 함(법 제33조제7항, 시행령 제62조)

- (등록)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관리하여야할 제재정보는 다음과 같으며 관련 정보가 변동되는 경우 지체 없이 변동된 사항을 반영해야함(시행령 제62조제2항 및 제3항)
  - 제재처분의 사유 및 처분의 내용
  - 제재처분을 받은 연구개발기관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 제재처분을 받은 제재대상자의 성명 및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연구자 식별을 위하여 발부하는 국가연구자번호
  - 제재대상자 소속기관의 명칭 및 주소

- (공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개별 제재대상자에 대한 단일 처분에 대해 ① 참여제한 처분의 기간이 5년 이상이거나 ② 제재부가금 부과액이 이미 지급한 정부 연구개발비의 3배 이상인 경우 아래와 같은 사항을 공개하여야 함(시행령 제62조제1항 및 제2항)
  - 제재처분의 사유 및 처분의 내용
  - 제재처분을 받은 연구개발기관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 제재처분을 받은 제재대상자의 성명 및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연구자 식별을 위하여 발부하는 국가연구자번호
  - 제재대상자 소속기관의 명칭 및 주소

※ 제재정보가 공개되는 제재처분을 받은 대상자에게는 관련 법(법 제33조제7항 및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관련정보가 공개됨을 사전통지 및 확정통보 시 명확히 명시하여 안내해야함

법 제33조(제재처분의 절차 및 재검토 요청 등) ⑦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른 결정의 내용을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통합정보시스템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재처분과 관련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또는 제재처분 정보공개 대상자의 사망·폐업으로 명단 공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 1. 6., 2023. 3. 21.〉

1. 기간이 5년 이상인 참여제한
2. 부과금액이 이미 지급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3배 이상인 제재부가금

⑧ 평가단과 위원회의 구성·운영, 제4항에 따른 검토의 절차, 제7항에 따른 등록 및 공개의 내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62조(제재처분 정보의 등록 및 공개) ① 법 제33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23. 9. 19.〉

1. 제재처분과 관련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2. 제재처분 정보공개 대상자의 사망·폐업으로 명단 공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3. 제재처분의 원인이 되는 부정행위와 관련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

② 법 제33조제7항에 따라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 및 공개해야 하는 제재처분 결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재처분의 사유 및 처분의 내용
2. 제재처분을 받은 연구개발기관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3. 제재처분을 받은 제재대상자의 성명 및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연구자 식별을 위하여 발부하는 국가연구자번호
4. 제재대상자 소속기관의 명칭 및 주소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변동된 사항을 통합정보시스템에 반영해야 한다.

8. 제재부가금·환수금 납부 및 사후관리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환수처분 및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환수금 또는 제재부가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된 기간 내에 환수금 또는 제재부가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함(시행령 제63조) ☑ p.41-47 | 제3장의 9. 참고

  ※ 혁신법 제34조 제2항에 따른 사후관리는 전문기관이 대행할 수 있음(혁신법 제22조제1항)

- 연구개발비 환수금 납부 또는 제재부가금 처분을 받은 자는 처분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환수금 또는 제재부가금을 납부하여야 함(시행령 제63조제1항)

  ※ 처분대상자가 소멸한 경우, 해당 제재처분(참여제한, 제재부가금) 및 환수금에 대하여는 이를 직권으로 면제(취소)함이 타당함

- 경영악화, 천재지변, 재해 또는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제재부가금 또는 연구개발비 환수의 부과금액 전액을 한꺼번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과금액을 분할납부 또는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시행령 제63조제2항)

- 연구개발비 환수금 또는 제재부가금의 납부를 독촉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아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통지함(혁신법 시행령 제63조제3항)

  - 체납액

- 납부기한(독촉장 발급 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 납부장소
-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는 내용

시행령 제63조(제재처분 등의 사후관리) ① 제재부가금 또는 연구개발비환수를 통보받은 납부의무자는 해당 처분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납부의무자에게 경영악화, 천재지변, 재해 또는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제재부가금 또는 연구개발비환수의 부과금액 전액을 한꺼번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과금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하거나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재부가금 또는 연구개발비 환수를 독촉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독촉장을 발급하여 납부의무자에게 송부해야 한다.

1. 체납액
2. 납부기한(독촉장을 발급한 날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3. 납부장소
4.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는 내용

9. 국세 강제징수처분

(1) 국세 강제징수의 개념

가. 국세 강제징수

- 납부의무자가 기한 내에 임의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행정청이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 압류재산의 매각·추심, 청산 등을 진행하는 공법상의 절차, 즉 체납자에게 강제이행을 구하는 행정상의 강제집행을 의미함

나. 국세 강제징수 절차와 민사집행 절차 비교

- 국세 강제징수 절차는 공법관계에 따른 우월적 지위에서 행해지는 반면, 민사집행 절차는 양 당사자 간 채권자와 채무자로서 동등한 지위에서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임
  - 따라서 국세 강제징수 절차의 경우 사법 당국의 협력 없이 스스로 강제적 이행을 구하는 것이므로 집행권원*과 압류·추심명령이 필요하지 않은 반면, 민사집행 절차는 집행권원을 확보한 후 법원을 통하여 압류·추심명령을 별도로 받아야 함

    * 법원의 확정판결, 확정지급명령 등 강제집행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문서

다. 국세 강제징수 절차와 민사집행 절차의 경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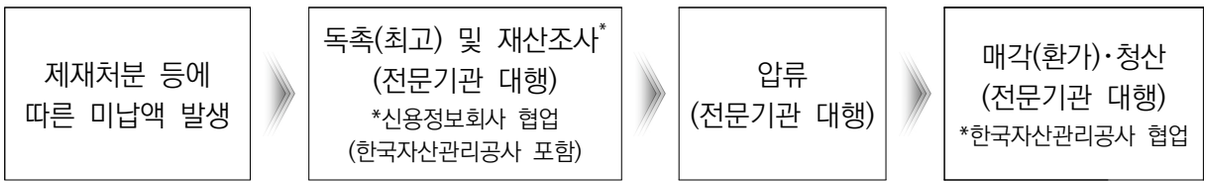
- 국세징수법과 민사집행법은 법률상 대등하므로 상호불간섭의 원칙에 따라 두 절차가 경합 시에는 각각 공매와 경매로 진행되어 해당 절차에서 매각대금을 먼저 납부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함

(2) 국세 강제징수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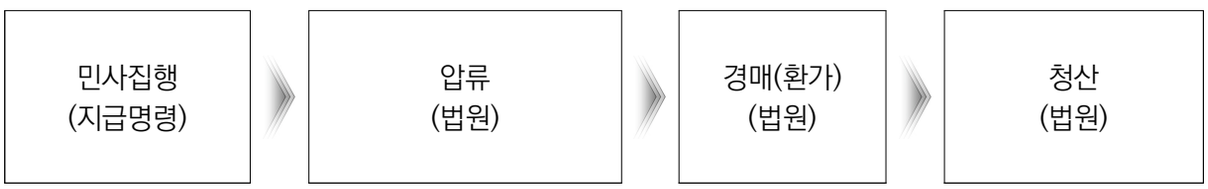
- 처분의 확정권원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있으나 처분에 따른 연구개발비 환수금 또는 제재부가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독촉을 하고,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는 업무는 전문기관이 대행할 수 있음(법 제34조 제2항 및 법 제22조 제1항)
  - 또한, 독촉에도 불구하고 납입하지 않는 경우 국가채권관리법 제14조의 2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할 수 있음

    *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하려는 경우 체납액 위탁업무 위탁계약 체결이 선행되어야 하며, 위탁에도 불구하고 ① 채권의 위탁 ② 거소확인·납부촉구·재산조사 ③ 통보 절차 이후의 압류(가압류) 등 법조치는 중앙관서가 직접수행해야 함

[1단계] 국세 강제징수 절차 적용



[2단계] 1단계 완료 후에도 미납액 잔존 또는 1단계 진행 불가시 민사집행 절차



※ 재산압류 등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필요시 전문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음

※ 1단계 처분완료 후에도 압류가 어려워 유체동산 등 추가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보충적으로 2단계 민사집행 절차를 진행하고, 해당 재산에 대해 이미 다른 채권자 신청으로 경매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받아 배당요구

※ 압류 재산이 없거나, 징수가능 금액이 집행비용을 넘는 등 강제징수의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민사집행절차를 생략하고 법적조치 5년 유예

가. 제재처분 등에 따른 미납액 발생

- 제재처분에 따라 확정된 제재부가금 또는 연구개발비환수처분에 따라 확정된 환수금 중 미납액에 대해서만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른 징수 가능

나. 독촉(최고)

- 환수금 또는 제재부가금 납부기한이 지났음에도 미납하는 경우 납부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 독촉(최고) 절차를 진행하며, 독촉(최고)시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급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함
- 독촉(최고) 절차를 진행함과 동시에 재산조사를 실시하여 체납자에게 실질적으로 압류할 재산이 있는지 확인
- 납부대상자의 납부연기 또는 분할납부 요청 시 종합신용등급 평가 등을 고려하여 승인 결정(시행령 제63조제2항)

다. 재산조사

-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이 체납자에 대해 직접 재산조사를 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신용정보회사와 협약체결을 통하여 개인의 상환여력정보 및 기업의 재무정보 확인가능

- 신용정보회사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개인의 상환여력정보에는 자택정보 이력, 자택 식별 요약정보(거주기간, 거주유형, 전용면적, 공시가격, 매매 상·하한가, 전세 상·하한가 등), 자택시세정보, KB아파트상세정보 등이 있음
- 또한 신용카드·체크카드 변동(예금거래활동 추정), 자택정보(주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변동, 직장정보(직장명, 주소, 전화번호) 변동을 제공 받아 신용거래활동을 추정할 수 있음. 이를 통해 고의적 체납자에 대한 전화독려, 예금압류 등이 가능
- 신용정보회사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기업의 재무정보로는 주거래 은행(예금채권압류에 활용), 신용등급체계(납부유예 판정시 활용), 경영진 정보, 주주현황(주주명, 소유주식수, 지분율, 대주주와의 관계), 주요재무정보, 산업재산권, 법정관리 진행상황, 부동산 경매 정보(배당금 압류에 활용) 등이 있음
- 재산조사 결과 강제징수 실익의 유무를 판단하여 강제징수절차 진행여부 판단

라. 재산압류

- 부동산·차량 등 등기 자산, 채권, 예금, 주식, 무체재산권(특허 등 지식재산권) 유형 구분 없이 압류 가능, 이때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예금 가압류 및 부동산 경매 시 배당금 가압류 가능
- 부동산에 대해서는 신용정보회사로부터 부동산경매상의 권리의무관계를 신용주체별로 제공받아 조치함. 채무자가 권리자인 경우 체납자의 배당금 수령액을 가압류하며, 체납자가 의무자인 경우 채무자 소유재산에 대한 경매사실을 파악하여 배당요구·교부 청구를 추진할 수 있음
- 재산조사 결과, 체납자 소유의 부동산(공장재단, 광업재단 포함)이 존재할 경우 압류조서를 작성하여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등기우편으로 압류등기 촉탁하고, 관할 등기소로부터 압류등기필 통지(1주일정도 소요)후 체납자에게 재산압류 통지서 및 압류조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

마. 매각 및 청산

- 부동산, 차량 등 등기·등록 재산 및 무체재산권등(산업재산권, 저작권 등)의 매각을 통해 변제받을 수 있음. 이때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약을 맺어 위탁 처리하는 것도 가능함
- 예금채권에 대한 직접 추심이 어려운 경우 신용정보회사를 통한 가압류를 통해 간접적으로 추심도 가능함
- 매각이 완료된 후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배분 기일 및 배분계획서를 통보하면 전문기관은 배분희망 계좌정보를 포함한 지급동의서를 회신하여 청산 금액을 배분받음. 이때 체납자가 복수 부처의 과제에 동시에 체납한 경우에는 민법의 변제충당 원칙에 따라 이행일(납부기한)이 먼저 도래한 체납금을 먼저 충당하게 됨

민법 제477조(법정변제충당) 당사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채무중에 이행기가 도래한 것과 도래하지 아니한 것이 있으면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2. 채무전부의 이행기가 도래하였거나 도래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3.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같으면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나 먼저 도래할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4. 전2호의 사항이 같을 때에는 그 채무액에 비례하여 각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3) 압류 해제 및 유예

가. 압류 해제(국세징수법 제57조)

- 압류와 관계되는 체납액의 전부가 납부 또는 충당된 경우
- 총 재산의 추산가액이 강제징수비(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에 우선하는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 제3호에 따른 채권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를 징수하면 남을 여지가 없어 강제징수를 종료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 다만 체납처분 목적물 재산에 대해 교부청구 또는 참가압류가 있는 경우로서 교부청구 또는 참가압류와 관계된 체납액을 기준으로 남을 여지가 있는 경우는 제외

- 연구개발비 환수처분 또는 제재부가금 제재처분에 대한 법적 쟁송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법원으로부터 관련 징수 정지 가처분이 있지 않은 이상 징수 절차를 진행해야 함

국세징수법 제57조(압류 해제의 요건) ①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압류와 관계되는 체납액의 전부가 납부 또는 충당(국세환급금, 그 밖에 관할 세무서장이 세법상 납세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전을 체납액과 대등액에서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60조제1항 및 제71조제5항에서 같다)된 경우
2. 국세 부과의 전부를 취소한 경우
3. 여러 재산을 한꺼번에 공매(公賣)하는 경우로서 일부 재산의 공매대금으로 체납액 전부를 징수한 경우
4. 총 재산의 추산(推算)가액이 강제징수비(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에 우선하는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채권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를 징수하면 남을 여지가 없어 강제징수를 종료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만, 제59조에 따른 교부청구 또는 제61조에 따른 참가압류가 있는 경우로서 교부청구 또는 참가압류와 관계된 체납액을 기준으로 할 경우 남을 여지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제41조에 따른 압류금지재산을 압류한 경우

6.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②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1. 압류 후 재산가격이 변동하여 체납액 전액을 현저히 초과한 경우
2. 압류와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 또는 충당된 경우
3. 국세 부과의 일부를 취소한 경우
4.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한 경우

나. 압류·매각의 유예(국세징수법 제105조)

-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의 징수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세징수법 제105조(압류·매각의 유예) ① 관할 세무서장은 체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체납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그 체납액에 대하여 강제징수에 따른 재산의 압류 또는 압류재산의 매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예할 수 있다.

1. 국세청장이 성실납세자로 인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2.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체납자가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의 징수가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관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유예를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미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산의 압류를 유예하거나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 그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성실납세자가 체납세액 납부계획서를 제출하고 제106조에 따른 국세체납정리위원회가 체납세액 납부계획의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납부 대상기관의 부도·폐업·회생·파산 시 처리 방법

가. 납부 대상기관의 폐업·부도 등으로 징수의 실익이 없어진 경우

- 중앙행정기관의 장(전문기관의 장)은 납부대상 기관이 폐업, 부도, 파산, 심각한 경영악화 등의 사유로 환수금 또는 제재부가금 징수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면 심의를 거쳐 5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징수절차를 중지할 수 있음
  -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징수절차의 중지 정보를 내부 관리시스템 및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 및 반영하여 관리하고, 신용정보회사를 통하여 1년 간격으로 폐업 여부 및 재산 상태를 파악함
- 징수를 중지한 경우라도 납부대상 기관이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면 중지되었던 징수 조치를 개시함(정기적으로 회생절차 진행 여부, 폐업상태 등 확인 필요)

- 폐업 또는 부도 상태에 빠지더라도 환수대상자의 법인격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장래 영업을 개시하거나 자력을 회복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따라서 납부통지, 독촉 등 환수를 위하여 마련된 절차를 진행하되, 강제집행 등 법적 조치 단계를 진행할 실익이 존재하는지를 별도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함

● 징수절차 중지 기간 경과 후에도 납부 대상기관의 부도, 폐업, 파산 등의 상황이 지속되어 징수가 어려울 경우, 환수금 또는 제재부가금을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음

※ 「국가채권관리법」제31조에서는 채무자가 자력을 회복하지 못하고 장래에도 변제할 가능성이 없을 때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그 채무(연체금 및 이자 포함)를 면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나. 납부 대상자의 회생·파산 절차가 개시결정된 경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수금 채권 및 제재부가금 채권은 회생채권 또는 파산채권으로 분류되므로, 환수금 채권 및 제재부가금 채권을 채권신고기간 내에 회생채권 또는 파산채권으로 신고하여야 함

- 회생채권의 경우 '관계인집회 결의-법원 인가'를 통해 확정된 회생계획안에서 조정된 채권액 및 변제기간에 따라 조정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액은 소멸
- 파산채권은 채권조사절차를 거쳐 확정된 채권액이 법원의 채권자표에 기재되면 그 기재된 채권액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됨
- 따라서 회생 및 파산 절차에서 확정된 채권액 범위 내에서 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채권추심의 유형별 절차]



* 회생기업 채권추심 절차 : ① 회생절차참가(회생채권 신고 등) ②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 ③ 회생계획에 따라 인가된 금액(금액·상환 조건 등)을 변제계획에 따라 추심

** 파산기업 채권추심 절차 : ① 파산절차참가(파산채권 신고, 파산재단 가입 등) ② 법원의 배당금액 결정(파산자의 재산을 경매 환가 후 채권자에게 결과 및 배당 금액 통지) ③ 배당금 추심

(5) 소멸시효

- (개념)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경우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로, 재판상 청구·지급명령 등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중단 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다시 새로이 시효가 진행됨
-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함(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

  ※ 참고로 상기 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에서 말하는 다른 법률의 규정이라 함은 5년의 소멸시효기간보다 짧은 기간의 소멸시효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 5년보다 긴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해당하지 않음(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57856 판결)
- 환수금 및 제재부가금을 징수하는 권리는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이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에서 달리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함

  ※ 단 판결을 통해 확정된 채권에 대해서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됨(민법 제165조)
- (소멸시효의 기산점) 환수금의 경우 소멸시효 기산점은 환수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 즉, 연구자등이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를 사용한 때이며, 제재부가금의 경우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제재부가금 처분이 이루어진 시점임
  - 제재부가금 처분의 경우 행정법상 의무위반에 따른 금전적제재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반면, 혁신법상의 환수금 채권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내지는 불법행위에 기인한 손해배상청구권과 유사한 성질을 가지므로 환수금을 청구 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때를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는 제재대상자의 예측가능성 보호를 위해 제재처분 사유가 발생한 연구개발과제의 종료일 또는 그 제재처분 사유가 발생한 국가연구개발활동의 종료일부터 10년이 지나면 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으나(혁신법 제32조 제5항) 이는 제재처분의 제척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환수처분 및 제재부가금 처분에 대한 소멸시효를 규정한 것은 아님 ☑ p.18-19 | 제2장의 3. (2) 참고

국가재정법 제96조(금전채권·채무의 소멸시효) ①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또한 제1항과 같다.
③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의 경우 소멸시효의 중단·정지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또한 같다.
④ 법령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행하는 납입의 고지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민법 제165조(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①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제4장 제재처분 기준

1. 제재처분 일반 기준

(1) 참여제한 처분 기준(시행령 제59조제1항 관련) : 시행령 [별표6]

가. 위반행위별 참여제한 기간 개별기준

- 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위반행위로서 법 제3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는 제외한다)에 대한 위반행위별 참여제한 기간

위반행위	참여제한 기간
1)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과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2년
2)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3조제7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회수 금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연구개발비 회수 금액을 납부할 때까지
3)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법 또는 협약에 따른 의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않아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가 변경 또는 중단된 경우	2년
4)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기술료의 일부 또는 수익의 일부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기술료의 일부 또는 수익의 일부를 납부할 때까지
5)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법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	
가)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위조·변조·표절하거나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행위를 한 경우	3년 이내
나) 법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하거나 제3자에게 소유하게 한 행위를 한 경우	3년
다)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보안대책을 위반한 경우	2년
라)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보안사항을 국내에 누설하거나 유출하는 행위를 한 경우	2년
마)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보안사항을 국외에 누설하거나 유출하는 행위를 한 경우	5년
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거나 수행하는 행위를 한 경우	2년
사)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활동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제5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다만, 제5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행위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로 한정한다.	2년
6)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2년

- 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반행위로서 법 제3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부정행위에 대한 참여제한 기간

위반행위	참여제한 기간
1)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1,000만원 이하인 경우	6개월 이상 2년 이내
2)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1,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인 경우	2년 초과 4년 이내
3)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4년 초과 5년 이내
4)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인 경우	5년 초과 7년 이내
5)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5억원 초과인 경우	7년 초과 10년 이내

나. 참여제한 처분 가중기준

-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 시행령 [별표6]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참여제한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음
  - 연구개발비 회수금 미납, 기술료 일부 또는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일부 미납의 제재처분 사유인 경우에는 가중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단, 가중하더라도 참여제한 기간은 10년을 한도로 함 ☑ p.21-22 | 제2장의 3. (4) 참고

(시행령 [별표6] 참여제한 처분기준 1호 가목)

1) 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반행위로서 법 제31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부정행위 중 학생 인건비 또는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연구수당의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한 경우
2)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5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로 참여제한 처분을 받는 경우.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3) 하나의 연구개발과제에서 발생한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 이 경우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참여제한 기간 중 가장 긴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구체적인 세부기준은 본 가이드라인 제4장 2. 제재처분사유별 가중·감경 세부기준 참고

다. 참여제한 처분 감경기준

-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 시행령 [별표6]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참여제한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음
  - 단, 감경하더라도 연구개발비 회수금 미납, 기술료 일부 또는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일부 미납의 제재처분 사유인 경우에는 감경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시행령 [별표6] 참여제한 처분기준 1호 나목)

1)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위반행위로서 법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검증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 이 경우 감경되는 참여제한은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참여제한으로 한정한다.
2) 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위반행위로서 법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한 자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한 경우
3)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구체적인 세부기준은 본 가이드라인 제4장 2. 제재처분사유별 가중·감경 세부기준 참고

라. 참여제한 처분 합산기준

-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서로 다른 연구개발과제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각 연구개발과제별로 각각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해 시행령 [별표6]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참여제한 기간 및 가중·감경 기준을 적용한 후 산출된 참여제한 기간을 모두 합산함

  * 혁신법 제3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각 연구과제별로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경우 각 연구과제별로 가장 긴 기간들을 합산함

- 합산하여 정하는 참여제한 기간은 10년을 한도로 함 ☑ p.21-22 | 제2장의 3. ⑷ 참고

마. 기타

- 참여제한 처분은 사안별로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처분대상자를 결정함. 즉, 처분대상자를 ① 기관에게만 ② 개인에게만 ③ 기관과 개인 모두 등으로 결정 가능

참여제한 처분기준 적용을 위한 제시

(1) 동시 처분하는 경우

가. 하나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처분기준

- 하나의 연구개발과제에서 서로 다른 위반행위가 둘 이상 발생한 경우 시행령 [별표6] 제1호 가목 3)을 적용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다른 참여제한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음
  - '위반행위'는 혁신법 제32조 제1항 각호의 제재사유를 의미함

나. 둘 이상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처분기준

- 둘 이상의 연구개발과제에서 동일한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합산 없이 해당 제재사유에 대한 처분 부과
  - 개별 사안에서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행령 [별표6] 제1호 가목 4)에 따라 가중할 수 있음
- 둘 이상의 연구개발과제에서 서로 다른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시행령 [별표6] 제1호 다목 합산기준에 따라 10년의 한도로 합산

(2) 처분 시점이 다른 경우

- 하나의 연구개발과제에서 선행처분 후 전과 같은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해당 위반행위에 대해 추가로 처분할 수 있음
  - 후행처분 확정 시 참여제한 효력 발생
  - 동시 처분하는 경우를 가정하여 참여제한 기한을 산정한 후 나머지만큼 후행 처분을 부과하는 등 구체적 사안을 고려하여 제재 양정 필요

〈예시〉 A과제에서 5,000만원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 위반행위에 대해 제재처분 부과 후 5,000만원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 위반행위를 추가로 적발한 경우

- (1안) 5,000만원에 대해 참여제한 4년 부과 후 추가로 발견된 위반 금액만큼 추가로 5,000만원에 대한 4년 처분
- (2안) 동시 처분을 가정하면 1억 원에 대하여 5년의 참여제한 처분이 가능한데, 선행처분으로 참여제한 4년이 부과되었으므로 후행처분으로 참여제한 1년만 부과

- 하나의 연구개발과제에서 선행처분 후 전과 다른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선행처분을 고려하지 않고 후행처분을 부과하고, 후행처분 확정 시 참여제한 효력 발생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의 기산일 조항은 혁신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적용 불가

☞ 해당 제시안은 다양한 사례에 대한 처분을 결정할 때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것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2) 제재부가금 처분 기준(시행령 제59조제2항 관련) : 시행령 [별표7]

가.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위반행위별 제재부가금 부과기준

- 법 제32조 제1항 각호의 위반행위(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위반행위로서 법 제31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는 제외한다)에 대한 위반행위별 제재부가금 부과액

위반행위	제재부가금 부과액
가)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과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에 대한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를 말한다) 전액
나) 이 법 또는 협약에 따른 의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않아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가 변경 또는 중단된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에 대한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를 말한다) 전액
다) 법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	
(1)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위조·변조·표절하거나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에 대한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를 말한다) 전액의 100분의 150
(2) 법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하거나 제3자에게 소유하게 한 행위를 한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에 대한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를 말한다) 전액의 100분의 150
(3)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보안대책을 위반한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전액
(4)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보안사항을 국내에 누설하거나 유출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전액
(5)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보안사항을 국외에 누설하거나 유출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전액의 100분의 250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전액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에 대한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를 말한다) 전액
(8)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활동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제5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다만, 제5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행위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로 한정한다.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에 대한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를 말한다) 전액
라)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에 대한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를 말한다) 전액

● 법 제32조 제1항 3호에 따른 위반행위로서 법 제31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부가금 부과액 기준

위반행위	제재부가금 부과액
가)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1,000만원 이하인 경우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전액
나)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1,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인 경우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전액
다)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전액
라)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인 경우	1억원 +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중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0)
마)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5억원 초과인 경우	7억원 +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중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0)

나. 연구책임자·연구자·연구지원인력 및 연구개발기관 소속임직원에 대한 위반행위별 제재부가금 부과기준(시행령 [별표7] 제2호 나목)

● 법 제32조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위반행위로서 법 제31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는 제외한다)에 대한 위반행위별 제재부가금 부과액

위반행위	제재부가금 부과액
가)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과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에 대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말한다) 전액의 100분의 20
나) 이 법 또는 협약에 따른 의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않아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가 변경 또는 중단된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에 대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말한다) 전액의 100분의 20
다) 법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	
(1)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위조·변조·표절하거나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에 대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말한다) 전액의 100분의 30
(2) 법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하거나 제3자에게 소유하게 한 행위를 한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에 대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말한다) 전액의 100분의 30

위반행위	제재부가금 부과액
(3)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보안대책을 위반한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전액의 100분의 20
(4)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보안사항을 국내에 누설하거나 유출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전액의 100분의 20
(5)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보안사항을 국외에 누설하거나 유출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전액의 100분의 50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전액의 100분의 20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에 대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말한다) 전액의 100분의 20
(8)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활동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제5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다만, 제5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행위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로 한정한다.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에 대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말한다) 전액의 100분의 20
라)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에 대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말한다) 전액의 100분의 20

- 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반행위로서 법 제3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부가금 부과액 기준

위반행위	제재부가금 부과액
가)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1,000만원 이하인 경우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전액
나)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1,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인 경우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전액
다)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전액
라)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인 경우	1억원 +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중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0)
마)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5억원 초과인 경우	7억원 +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중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0)

다. 제재부가금 처분 가중기준

-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 [별표7]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음
- 단, 가중하더라도 이미 지급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5배를 한도로 함 ☑ p.21-22 | 제2장의 3. ⑷ 참고

(시행령 [별표7] 제재부가금 처분기준 1호 가목)

1) 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반행위로서 법 제3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부정행위 중 학생인건비 또는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연구수당의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한 경우
2) 하나의 연구개발과제에서 발생한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 이 경우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액 중 가장 큰 제재부가금 부과액을 기준으로 한다.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구체적인 세부기준은 본 가이드라인 제4장 2. 제재처분사유별 가중·감경 세부기준 참고

라. 제재부가금 처분 감경기준

-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 [별표7]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음

(시행령 [별표7] 제재부가금 처분기준 1호 나목)

1)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반행위로서 법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검증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 이 경우 감경되는 제재부가금 부과액은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제재부가금 부과액으로 한정한다.
2) 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반행위로서 법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한 자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한 경우
3)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구체적인 세부기준은 본 가이드라인 제4장 2. 제재처분사유별 가중·감경 세부기준 참고

마. 제재부가금 부과액 합산기준

-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서로 다른 연구개발과제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각 연구과제별로 각각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해 시행령 [별표7]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액 및 가중·감경 기준을 적용한 후 산출된 제재부가금 부과액을 모두 합산함

  * 혁신법 제3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각 연구과제별로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경우 각 연구과제별로 가장 큰 제재부가금을 합산함

- 이 경우 합산하여 정하는 제재부가금 부과액은 이미 지급한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5배를 한도로 함 ☑ p.21-22 | 제2장의 3. (4) 참고

바. 기타

-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은 사안별로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처분대상자를 결정함. 즉, 처분대상자를 ① 기관에게만 ② 개인에게만 ③ 기관과 개인 모두 등으로 결정 가능

- 시행령 [별표7]에서 '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에 대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말한다'라는 병기가 없는 경우에는 단계를 통틀어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지급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전액을 의미함

  *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과제 연구개발비(총 연구비)에서 연구개발기관부담 연구개발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의미함(정부지원연구개발비 = 연구개발과제 연구개발비 – 연구개발기관부담 연구개발비)

  * 공동연구개발의 경우, 공동연구개발기관 별로 지급받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의미함

2. 제재처분사유별 가중·감경 세부기준

〈 세부기준의 의의 〉

- (목적)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있어 제재처분은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자 개개인의 수익을 박탈하거나 권익을 제한 또는 침해하는 조치이므로,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같이 처분 상 재량권이 갖는 중요성에 상응하도록,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자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 및 시행령 제59조를 적용하는데 필요한 형평·타당한 상세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 (효력) 제재처분 가중·감경 세부기준은 그동안 실제 이루어진 제재처분 사례들을 참고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제재처분의 재량권을 행사함에 있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이며, 타당성과 설득력을 가지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 제재처분 가중·감경 세부기준은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재처분의 정도를 결정하고,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가 제재처분의 적절성을 재검토함에 있어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자 하며,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 권고적 기준이다.

- (적용대상)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 제1항 각호의 위반행위의 개별 특성을 반영하여 각 위반행위별로 독립적인 기준을 설정하는 방식이다.

- (적용방법)

위반행위 유형의 결정	→	가중·감경 여부 결정	→	처분정도의 결정

  - ① 위반행위 유형의 결정 : 법령 위반행위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 제1항 각호 중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결정한다.

    ※ 본 세부기준에 기재된 '유형의 예시' 및 '가중·감경요소의 예시'는 범례에 불과하고, 이에 한정하지 아니한다.

  - ② 가중, 감경 여부의 결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 6] 및 [별표 7]의 가중·감경기준 중 명확히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와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감경의 필요성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 ③ 처분정도의 결정 : 가중·감경의 범위 내에서 처분의 정도를 결정한다.

    ※ 가중사유가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 중복하여 가중 처분가능하나, 상한선(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이는 감경처분의 경우에도 동일하고, 이 때 하한선(2분의 1) 미만으로 감경할 수 없다.

  - ④ 참여제한과 제재부가금 별도 처분 : 가중 및 감경 사유는 제재처분의 종류(참여제한/제재부가금)에 따라 달리 적용 가능하다.

    ※ 참여제한과 제재부가금 중 하나만 감경(가중)할 수 있거나 모두 감경(가중)할수 있음

(1) 수행과정 및 결과의 극히 불량(혁신법 제32조 제1항 제1호)

<table>
<tr><th>구분</th><th colspan="2">제재처분</th><th>감경</th><th>기본</th><th>가중</th></tr>
<tr><td rowspan="4">수행과정 및
결과의
극히 불량</td><td colspan="2">참여제한</td><td rowspan="3">2분의 1의
범위</td><td>2년</td><td rowspan="3">2분의 1의
범위</td></tr>
<tr><td rowspan="2">제재부가금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기준)</td><td>기관</td><td>100%</td></tr>
<tr><td>개인</td><td>20%</td></tr>
</table>

감경요소의 예시	가중요소의 예시
• 사소한 부주의·오류 • 예측 불가능한 환경변화 • 대상자에게 책임을 돌리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 동종 전력(참여제한의 경우에 한함) • 하나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해 둘 이상의 위반행위

[유형의 예시]

- 단계평가 또는 최종평가 결과, 혁신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연구과정' 및 '연구결과' 모두 '극히 불량' 판정 받은 경우를 의미함
  - '극히 불량'이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이 부적절하고 연구개발성과가 그 수행계획에 비하여 매우 미흡한 경우를 말한다(혁신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단서)
    ※ 제재처분 시에는 연구결과(성과목표 달성도)에 대한 평가내용 뿐만 아니라, 연구수행과정에 대한 평가내용까지도 명확하게 처분사유로 제시하여야 함

[감경요소의 예시]

① 예측 불가능한 환경변화
-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에서 인정하는 사회·경제·시장·기술개발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사업화 가능성이 낮아져 더 이상 기술개발의 필요성이 미비한 경우
- 경영악화, 폐업, 회생, 파산 등 과제수행과 관련한 재정적 장애 사정을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 기관에 미리 고지하고, 과제계속의 의지를 보여주거나 노력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② 대상자에게 책임을 돌리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이때, 해당자에게 귀책사유 없음이 명백히 밝혀진 경우에는 제재대상자에서 제외)

- 과제 수행 과정 및 결과의 극히 불량의 원인이 다른 공동연구개발기관(B)에게 있고, 대상기관(대상자)(A)는 과제수행에 최선을 다하고, 그 공동연구개발기관(B)에게 이행을 촉구하며 전문기관에게 과제수행의 어려움을 알리는 등 과제 중단을 회피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경우, 대상기관(대상자)(A)

  ※ 이 때, 대상기관(대상자)가 주관연구개발기관인 경우도 포함

- 경영상의 이유(폐업, 회생, 파산, 연구인력 대부분의 퇴사, 연구비계좌의 압류 등)로 인한 목표 미달성에 있어서, 대표자가 아닌 연구책임자

- 최종 연구책임자로 등록되기는 하였으나, 과제 수행의 극히 불량이 이미 상당정도 진행되어, 연구 책임자가 된 후 사태를 수습할 것을 기대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책임자가 된 후 사태를 수습하기 위하여 가능한 노력을 기울인 경우, 최종 연구책임자

- 과제 종료 당시의 등기상 혹은 서류상 대표자이기는 하나, 대표자로 취임하기 전에 과제 수행의 극히 불량이 이미 상당정도 진행되어, 대표자가 된 후 사태를 수습할 것을 기대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자가 된 후 사태를 수습하기 위하여 가능한 노력을 기울인 경우, 종료 당시의 대표자

- 기관의 대표자로서, 연구책임자가 따로 있어 연구개발에 대해 전권을 받아 진행하고, 대표자는 경영에만 관여한 경우, 그 대표자와 기관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 각 목에 따른 재난과 목표미달성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대상기관 및 대상자

- 혁신법 제2조 제3호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기관 또는 단체,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사업자등록번호의 법인 구분 코드가 '82' 또는 '83'인 법인 등 비영리기관으로서, 각 연구책임자의 권한과 책임하에 연구개발이 진행되고, 기관의 대표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관여하지 않은 경우, 대상기관 및 대표자

(2) 법 또는 협약 상 의무 위반(혁신법 제32조 제1항 제2호)

구분	제재처분		감경	기본	가중
법 또는 협약상 의무 위반	참여제한		2분의 1의 범위	2년	2분의 1의 범위
	제재부가금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기준)	기관		100%	
		개인		20%	

감경요소의 예시	가중요소의 예시
• 사소한 부주의·오류 • 의무위반 사항의 시정 • 대상자에게 책임을 돌리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 동종 전력(참여제한의 경우에 한함) • 하나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해 둘 이상의 위반행위

[유형의 예시]

- 혁신법 및 관련 규정, 연구개발 협약상 의무를 고의로 위반하여, 혁신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별평가에 따라 연구개발과제가 변경 또는 중단된 경우를 의미함
  - 특별평가 결과 법 또는 협약 상 의무위반의 고의성이 입증되고 제재처분의 필요성 등이 확인 되어야 함

  (예) 혁신법 및 관련 규정의 절차를 따르지 않고 장비를 구매하거나 임의로 처분하여, 특별평가에 따라 연구개발과제가 변경 또는 중단된 경우

[감경요소의 예시]

① 의무위반 사항의 시정
- 전문기관 등에 적발된 의무 위반 사항 등의 문제를 시정 하였거나, 시정하지 못하였더라도 그 사유가 소명 되는 경우

② 대상자에게 책임을 돌리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이때, 해당자에게 귀책사유 없음이 명백히 밝혀진 경우에는 제재대상자에서 제외)
- 연구책임자의 의무불이행이고, 기관으로서는 연구책임자에게 의무이행을 촉구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책임자의 연락 두절 등으로 인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 있어서, 그 대표자와 기관
- 혁신법 제2조 제3호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기관 또는 단체,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사업자등록번호의 법인 구분 코드가 '82' 또는 '83'인 법인 등 비영리기관으로서, 각 연구책임자의 권한과 책임하에 연구개발이 진행되고, 기관의 대표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관여하지 않은 경우, 대상기관 및 대표자

(3) 연구개발 자료·성과의 위조·변조·표절 및 부당한 저자 표시 (혁신법 제31조 제1항 제1호)

구분	제재처분		감경	기본	가중
연구개발 자료·성과의 위조 등	참여제한		2분의 1의 범위	3년 이내	2분의 1의 범위
	제재부가금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기준)	기관		150%	
		개인		30%	

감경요소의 예시	가중요소의 예시
• 사소한 부주의·오류 • 위반 내용이 경미한 경우 • 연구개발기관의 검증 후 필요한 조치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 • 자진신고를 한 자 • 대상자에게 책임을 돌리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 동종 전력(참여제한의 경우에 한함) • 하나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해 둘 이상의 위반행위

[유형의 예시]

- 존재하지 않는 연구개발 자료 및 연구개발성과를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 연구시설·장비, 연구재료 및 연구개발과정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 성과를 임의로 변형·추가·삭제함으로써 연구개발수행의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 일반적 지식이 아닌 연구자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 성과를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연구자 자신의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 성과에 사용하는 행위
- 연구개발 수행의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감경요소의 예시]

① 위반 내용이 경미한 경우

- 해당 연구개발 자료 또는 성과에 투입된 연구개발비가 극히 적은 경우
- 성과보고 중 해당 연구개발 자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경우

- 연구개발 수행의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고 부당하게 저자로 표시되었으나, 연구개발 수행을 위한 자료조사, 실험참여 등 일부 연구개발에 기여한 사정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연구개발기관의 검증 후 필요한 조치

- 연구윤리위반 행위 조사 및 검증에 필요한 자체규정을 갖추고, 그 규정에 따라 조사 및 검증한 후 위반행위자를 징계(징계부가금)하거나, 위반행위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징계를 요청한 경우에 해당 연구개발기관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

- 위반행위를 인정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자료의 제출, 현장조사, 확인서의 징구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제재처분을 수용하는 의사를 밝힌 경우
- 연구부정행위를 뉘우치고, 위·변조한 자료를 폐기하거나 혹은 해당 논문을 철회하거나 특허를 취소하거나 부당한 저자 표기를 수정하는 등 부정행위의 시정을 한 경우

④ 자진신고를 한 자

- 위반행위에 가담하였으나, 적발 전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 등 연구개발과제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위반행위를 알리고 조사 등에 적극 협조한 경우에 해당 자진신고자

⑤ 대상자에게 책임을 돌리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이때, 해당자에게 귀책사유 없음이 명백히 밝혀진 경우에는 제재대상자에서 제외)

- 연구책임자 또는 대표자 외에 표절한 논문의 작성을 주도한 사람이 따로 있고, 위반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 해당 과제의 연구책임자 또는 대표자
- 혁신법 제2조 제3호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기관 또는 단체,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사업자등록번호의 법인 구분 코드가 '82' 또는 '83'인 법인 등 비영리기관으로서, 각 연구책임자의 권한과 책임 하에 연구개발이 진행되고, 기관의 대표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경우, 대상기관 및 대표자

(4)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 위반(혁신법 제31조 제1항 제2호)

위반금액(정부지원금 지분)		감경 (최소처분 기준)	기본	가중 (최대처분 기준)
1,000만 원 이하	참여제한	3개월 이상 ~	6개월 이상 2년 이내	~ 3년 이내
	제재부가금 (위반금액 기준)	50% ~	100%	~ 150%
1,0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참여제한	1년 초과 ~	2년 초과 4년 이내	~ 6년 이내
	제재부가금 (위반금액 기준)	50% ~	100%	~ 150%
5,0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참여제한	2년 초과 ~	4년 초과 5년 이내	~ 7년 6개월 이내
	제재부가금 (위반금액 기준)	50% ~	100%	~ 150%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참여제한	2년 6개월 초과 ~	5년 초과 7년 이내	~ 10년 이내
	제재부가금 (위반금액 기준)	5천만 원 + 1억원 초과분의 75% ~	1억 원 + 1억 원 초과분의 150%	~ 1억 5천만 원 + 1억 원 초과분의 225%
5억 원 초과	참여제한	3년 6개월 초과 ~	7년 초과 10년 이내	~ 10년 이내
	제재부가금 (위반금액 기준)	3억 5천만 원 + 5억 원 초과분의 100% ~	7억 원 + 5억 원 초과분의 200%	~ 10억 5천만 원 + 5억 원 초과분의 300%

감경요소의 예시	가중요소의 예시
• 사소한 부주의·오류 • 위반 내용이 경미한 경우 • 상당 부분 피해 회복 • 위반금액 상당의 회사 또는 개인 비용을 과제 수행에 투입 • 연구개발기관의 검증 후 필요한 조치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 • 경영악화 등의 원인으로 위반금액의 대부분을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 소극가담 • 자진신고를 한 자 • 대상자에게 책임을 돌리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 학생인건비 등의 사용 용도 및 사용 기준 위반 • 동종 전력 (참여제한의 경우에 한함) • 하나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해 둘 이상의 위반행위

[유형의 예시]

- 혁신법 제13조 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사용 기준을 위반한 행위를 의미함

  ※ 연구개발비를 해당 과제의 연구수행에 사용하였지만 실수 또는 부주의로 인한 증빙서류 미비, 연구비 사용계획 변경 시 전문기관 미승인 등 경미하게 규정을 위반한 경우 등은 제재처분의 대상이 아니므로 정산을 통한 회수를 진행하여야 함

- 연구 장비 도입 관련 연구개발비 횡령 등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한 경우
  - 연구장비비를 허위로 또는 과다하게 청구한 후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개인적으로 편취하는 행위
  - 연구개발과제와 관련 없는 장비에 대한 비용을 연구장비비로 집행하는 경우

[감경요소의 예시]

① 위반 내용이 경미한 경우

- 일시적으로 연구개발과제의 목적 외로 사용되었으나, 그 금액이 과소하고, 연구개발기관 혹은 연구자가 위반사실 발견 후 즉시 원복 한 경우

② 상당 부분 피해회복

- 제재처분 전에 위반금액의 전부 또는 상당액을 회복한 경우 ☑ p.83-84 | 제5장의 3. 참고
- 연구원에 대한 인건비를 지체하였으나, 해당 연구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경우
- 재료비를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으나, 적발 전에 원래 지급해 주어야 할 거래처에 자비로 변제한 경우
- 동일한 사실관계로 수사가 개시되었거나 형사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위반금액을 공탁한 경우

③ 위반금액 상당의 회사 또는 개인 비용을 과제 수행에 투입

- 위반금액에 상응하는 회사 또는 개인 돈을 과제 수행 과정에 투입하는 등 연구과제 수행에 노력한 경우

④ 연구개발기관의 검증 후 필요한 조치

- 연구개발비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 위반행위 조사 및 검증에 필요한 자체규정을 갖추고, 그 규정에 따라 조사 및 검증한 후 위반행위자를 징계(징계부가금)하거나, 위반행위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징계를 요청한 경우에 해당 연구개발기관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

-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 위반행위를 인정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자료의 제출, 현장조사, 확인서의 징구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제재처분을 수용하는 의사를 밝힌 경우

⑥ 경영악화 등의 원인으로 위반금액의 대부분을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이 없는 경우

- 위반행위의 동기가 경영악화에 기인한 것으로, 위반금액이 전체 연구개발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고, 그 대부분을 회사의 운영자금에 사용하고 사적인 용도로는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위반금액이 전체 연구개발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고, 위반금액의 대부분을 연구자를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비용으로 지출하는 등 사적인 용도로는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⑦ 소극가담

- 위반행위자가 행위를 주도하고, 전적으로 개인적인 용도(유흥비, 개인채무 변제 등)로 사용하였는데, 이를 방관하거나 관리·감독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위반행위자 아닌 대표자, 기관에 대하여 감경 가능; 위반행위자가 참여연구원인 경우, 위반행위자 아닌 대표자, 기관 및 연구책임자에 대하여 감경 가능). 다만, 이 경우 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 형사고소 등 추가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
- 연구책임자로서 사업비의 관리·집행 의무가 있으나, 대표자의 지시에 따른 행위이고, 용도 외 사용금액이 회사 운영자금, 양산목적 등에 사용된 경우, 연구책임자에 대하여 감경
- 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해당 과제에 대하여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나머지 대표자
- 직장 내 상하관계에 기하여, 대표자의 지시에 따라 위반행위를 하였고, 용도외 사용으로 인한 이익이 대표자 혹은 회사에 귀속된 경우 직원인 참여연구원

⑧ 자진신고를 한 자

- 위반행위에 가담하였으나, 적발 전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 등 연구개발과제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위반행위를 알리고 조사 등에 적극 협조한 경우에 해당 자진신고자

⑨ 대상자에게 책임을 돌리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이때, 해당자에게 귀책사유 없음이 명백히 밝혀진 경우에는 제재대상자에서 제외)

- 혁신법 제2조 제3호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기관 또는 단체,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사업자등록번호의 법인 구분 코드가 '82' 또는 '83'인 법인 등 비영리기관으로서, 각 연구책임자의 권한과 책임하에 연구개발이 진행되고, 기관의 대표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경우, 대상기관 및 대표자

[가중요소의 예시]

① 학생인건비 등의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 위반

-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연구수당의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을 위반한 경우
- 연구비 사용 관련하여 횡령 등의 혐의로 형사 처벌 받았거나 예정된 경우

(5)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관리 위반(혁신법 제32조 제1항 제3호)

구분	제재처분		감경	기본	가중
연구개발 성과의 소유·관리 위반	참여제한		2분의 1의 범위	3년	2분의 1의 범위
	제재부가금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기준)	기관		150%	
		개인		30%	

감경요소의 예시	가중요소의 예시
• 사소한 부주의·오류 • 위반 내용이 경미한 경우 • 원상회복 • 연구개발기관의 검증 후 필요한 조치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 • 대상자에게 책임을 돌리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 동종 전력(참여제한의 경우에 한함) • 하나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해 둘 이상의 위반행위

[유형의 예시]

- 혁신법 제16조 제1항 및 제2항에 반하여, 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개발성과를 그 기관 또는 개인으로 하여금 소유하게 한 연구개발기관을 의미함
- 과제의 참여 비중 혹은 사업의 성격(예를 들어, 기반구축사업 등)과 무관하게 어느 한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단독으로 소유하는 행위
- 혁신법 제16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에게 양도하지 않는 행위

[감경요소의 예시]

① 위반 내용이 경미한 경우

- 전체 연구개발비에 비하여 해당 연구개발성과에 투입된 연구개발비가 극히 적고, 전체 성과 중 해당 연구개발성과 부분이 극히 일부의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

② 원상회복

- 연구부정행위를 뉘우치고, 연구개발성과물의 소유권을 복귀(특허 이전·등록 등)시킨 경우

③ 연구개발기관의 검증 후 필요한 조치

- 연구윤리위반 행위 조사 및 검증에 필요한 자체규정을 갖추고, 그 규정에 따라 조사 및 검증한 후 위반행위자를 징계(징계부가금)하거나, 위반행위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징계를 요청한 해당 연구개발기관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

- 위반행위를 인정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자료의 제출, 현장조사, 확인서의 징구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제재처분을 수용하는 의사를 밝힌 경우

⑤ 대상자에게 책임을 돌리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이때, 해당자에게 귀책사유 없음이 명백히 밝혀진 경우에는 제재대상자에서 제외)

- 혁신법 제2조 제3호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기관 또는 단체,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사업자등록번호의 법인 구분 코드가 '82' 또는 '83'인 법인 등 비영리기관으로서, 각 연구책임자의 권한과 책임하에 연구개발이 진행되고, 기관의 대표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경우, 대상기관 및 대표자

(6) 보안대책 위반(혁신법 제31조 제1항 제4호)

구분	제재처분		감경	기본	가중
보안대책 위반	참여제한		2분의 1의 범위	2년	2분의 1의 범위
	제재부가금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기준)	기관		100%	
		개인		20%	

감경요소의 예시	가중요소의 예시
• 사소한 부주의·오류 • 위반 내용이 경미한 경우 • 연구개발기관의 검증 후 필요한 조치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 • 대상자에게 책임을 돌리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 동종 전력(참여제한의 경우에 한함) • 하나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해 둘 이상의 위반행위

[유형의 예시]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업기술과 관련된 비공개 연구개발성과의 유출방지를 위한 중앙행정기관의 보안대책을 위반한 행위
- 보안과제와 관련한 연구개발성과의 유출방지를 위한 중앙행정기관의 보안대책을 위반한 행위

[감경요소의 예시]

① 위반 내용이 경미한 경우

- 보안대책의 위반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성과가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
- 보안대책 중 단순하거나 경미한 절차 위반인 경우

② 연구개발기관의 검증 후 필요한 조치

- 연구윤리위반 행위 조사 및 검증에 필요한 자체규정을 갖추고, 그 규정에 따라 조사 및 검증한 후 위반행위자를 징계(징계부가금)하거나, 위반행위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징계를 요청한 경우에 해당 연구개발기관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

- 위반행위를 인정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자료의 제출, 현장조사, 확인서의 징구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제재처분을 수용하는 의사를 밝힌 경우

④ 대상자에게 책임을 돌리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이때, 해당자에게 귀책사유 없음이 명백히 밝혀진 경우에는 제재대상자에서 제외)

- 혁신법 제2조 제3호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기관 또는 단체,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사업자등록번호의 법인 구분 코드가 '82' 또는 '83'인 법인 등 비영리기관으로서, 각 연구책임자의 권한과 책임하에 연구개발이 진행되고, 기관의 대표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경우, 대상기관 및 대표자

(7) 보안사항 국내 누설 및 유출(혁신법 제31조 제1항 제4호)

구분	제재처분		감경	기본	가중
보안사항	참여제한		2분의 1의 범위	2년	2분의 1의 범위
국내누설 및	제재부가금	기관		100%	
유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기준)	개인		20%	

감경요소의 예시	가중요소의 예시
• 사소한 부주의·오류 • 원상회복 • 연구개발기관의 검증 후 필요한 조치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 • 대상자에게 책임을 돌리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 동종 전력(참여제한의 경우에 한함) • 하나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해 둘 이상의 위반행위

[유형의 예시]

- 보안과제의 보안사항을 국내로 누설하거나 유출하는 행위

[감경요소의 예시]

① 원상회복

- 보안사항의 유출이 그 정도가 경미하거나 관련 기관(또는 기업)에 대한 경제적 피해가 크지 않고, 해당 피해를 배상하는 등 원상회복한 경우

② 연구개발기관의 검증 후 필요한 조치

- 연구윤리위반 행위 조사 및 검증에 필요한 자체규정을 갖추고, 그 규정에 따라 조사 및 검증한 후 위반행위자를 징계(징계부가금)하거나, 위반행위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징계를 요청한 경우에 해당 연구개발기관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

- 위반행위를 인정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자료의 제출, 현장조사, 확인서의 징구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제재처분을 수용하는 의사를 밝힌 경우

④ 대상자에게 책임을 돌리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이때, 해당자에게 귀책사유 없음이 명백히 밝혀진 경우에는 제재대상자에서 제외)

- 혁신법 제2조 제3호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기관 또는 단체,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사업자등록번호의 법인 구분 코드가 '82' 또는 '83'인 법인 등 비영리기관으로서, 각 연구책임자의 권한과 책임하에 연구개발이 진행되고, 기관의 대표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경우, 대상기관 및 대표자

(8) 보안사항 국외 누설 및 유출(혁신법 제31조 제1항 제4호)

구분	제재처분		감경	기본	가중
보안사항	참여제한		2분의 1의 범위	5년	2분의 1의 범위
국외누설 및	제재부가금	기관		250%	
유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기준)	개인		50%	

감경요소의 예시	가중요소의 예시
• 사소한 부주의·오류 • 원상회복 • 연구개발기관의 검증 후 필요한 조치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 • 대상자에게 책임을 돌리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 동종 전력(참여제한의 경우에 한함) • 하나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해 둘 이상의 위반행위

[유형의 예시]

- 보안과제의 보안사항을 국외로 누설하거나 유출하는 행위

[감경요소의 예시]

① 원상회복

- 보안사항의 유출이 그 정도가 경미하거나 관련 기관(또는 기업)에 대한 경제적 피해가 크지 않고, 해당 피해를 배상하는 등 원상회복한 경우

② 연구개발기관의 검증 후 필요한 조치

- 연구윤리위반 행위 조사 및 검증에 필요한 자체규정을 갖추고, 그 규정에 따라 조사 및 검증한 후 위반행위자를 징계(징계부가금)하거나, 위반행위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징계를 요청한 경우에 해당 연구개발기관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

- 위반행위를 인정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자료의 제출, 현장조사, 확인서의 징구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제재처분을 수용하는 의사를 밝힌 경우

④ 대상자에게 책임을 돌리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이때, 해당자에게 귀책사유 없음이 명백히 밝혀진 경우에는 제재대상자에서 제외)

- 혁신법 제2조 제3호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기관 또는 단체,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사업자등록번호의 법인 구분 코드가 '82' 또는 '83'인 법인 등 비영리기관으로서, 각 연구책임자의 권한과 책임하에 연구개발이 진행되고, 기관의 대표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경우, 대상기관 및 대표자

(9)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 신청 또는 수행 (혁신법 제31조 제1항 제5호)

구분	제재처분		감경	기본	가중
부정한 방법으로 과제 신청·수행	참여제한		2분의 1의 범위	2년	2분의 1의 범위
	제재부가금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기준)	기관		100%	
		개인		20%	

감경요소의 예시	가중요소의 예시
• 사소한 부주의·오류 • 연구개발기관의 검증 후 필요한 조치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 • 자진신고를 한 자 • 대상자에게 책임을 돌리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 동종 전력(참여제한의 경우에 한함) • 하나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해 둘 이상의 위반행위

[유형의 예시]

- 신청자격이 없음에도 이를 속이고 신청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선정된 경우
- 뇌물을 공여하거나 강압에 의하는 등 위법한 방법을 동원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선정되거나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 연구개발계획서에 포함된 데이터 조작·위조·변조 등을 통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선정된 경우
- 연구개발과제와 무관하거나 성능(스펙)이 결여된 장비임에도 불구하고, 금품수수로 인한 해당 장비 구입 등의 경우
- 연구개발기간 동안 국외 정부, 기관, 단체 등으로부터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받거나 노무 또는 자문 등의 대가를 받은 사항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잘못 보고한 경우
- 이외,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 신청 또는 수행한 경우

대법원의 일반적 해석을 고려할 때, '부정한 방법'이란 "사회통념에 비추어볼 때 올바르지 아니하거나 허용되지 않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서 권한이 없거나 사용규칙·방법에 위반한 일체의 이용 방식 내지 수단"을 의미한다 볼 수 있음 (헌재 2021. 10. 28. 2019헌바448 참고)

[감경요소의 예시]

① 연구개발기관의 검증 후 필요한 조치

- 연구윤리위반 행위 조사 및 검증에 필요한 자체규정을 갖추고, 그 규정에 따라 조사 및 검증한 후 위반행위자를 징계(징계부가금)하거나, 위반행위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징계를 요청한 경우에 해당 연구개발기관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

- 위반행위를 인정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자료의 제출, 현장조사, 확인서의 징구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제재처분을 수용하는 의사를 밝힌 경우

③ 자진신고를 한 자

- 위반행위에 가담하였으나, 적발 전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 등 연구개발과제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위반행위를 알리고 조사 등에 적극 협조한 경우에 해당 자진신고자

④ 대상자에게 책임을 돌리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이때, 해당자에게 귀책사유 없음이 명백히 밝혀진 경우에는 제재대상자에서 제외)

- 대표자와 연구책임자가 다른 경우, 다른 어느 일방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을 몰랐다는 사정이 인정될 경우

- 혁신법 제2조 제3호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기관 또는 단체,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사업자등록번호의 법인 구분 코드가 ‘82’ 또는 ‘83’인 법인 등 비영리기관으로서, 각 연구책임자의 권한과 책임하에 연구개발이 진행되고, 기관의 대표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경우, 대상기관 및 대표자

(10)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활동의 건전성 저해 행위(혁신법 제31조 제1항 제6호)

구분	제재처분		감경	기본	가중
연구개발활동의 건전성 저해 행위	참여제한		2분의 1의 범위	2년	2분의 1의 범위
	제재부가금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기준)	기관		100%	
		개인		20%	

감경요소의 예시	가중요소의 예시
• 사소한 부주의·오류 • 연구개발기관의 검증 후 필요한 조치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 • 자진신고를 한 자 • 대상자에게 책임을 돌리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 동종 전력(참여제한의 경우에 한함) • 하나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해 둘 이상의 위반행위

[유형의 예시]

- 부정행위 제보자에 대한 신변상의 불이익 조치
- 부정행위 제보자에 대한 위협·협박
- 연구개발비 사용에 대한 증빙자료의 위조·변조
  - 연구장비 구매 관련 증빙서류를 허위로 발급하여 제출한 경우
-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의 허위 보고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해당하는 행위

[감경요소의 예시]

① 연구개발기관의 검증 후 필요한 조치

- 연구윤리위반 행위 조사 및 검증에 필요한 자체규정을 갖추고, 그 규정에 따라 조사 및 검증한 후 위반행위자를 징계(징계부가금)하거나, 위반행위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징계를 요청한 경우에 해당 연구개발기관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

- 위반행위를 인정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자료의 제출, 현장조사, 확인서의 징구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제재처분을 수용하는 의사를 밝힌 경우

③ 자진신고를 한 자

- 위반행위에 가담하였으나, 적발 전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 등 연구개발과제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위반행위를 알리고 조사 등에 적극 협조한 경우에 해당 자진신고자

④ 대상자에게 책임을 돌리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이때, 해당자에게 귀책사유 없음이 명백히 밝혀진 경우에는 제재대상자에서 제외)

- 혁신법 제2조 제3호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기관 또는 단체,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사업자등록번호의 법인 구분 코드가 '82' 또는 '83'인 법인 등 비영리기관으로서, 각 연구책임자의 권한과 책임하에 연구개발이 진행되고, 기관의 대표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경우, 대상기관 및 대표자

(11)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포기(혁신법 제32조 제1항 제4호)

구분	제재처분		감경	기본	가중
연구개발과제의 수행포기	참여제한		2분의 1의 범위	2년	2분의 1의 범위
	제재부가금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기준)	기관		100%	
		개인		20%	

감경요소의 예시	가중요소의 예시
• 사소한 부주의·오류 • 연구개발자료 또는 성과의 양도·양수 • 정부 연구개발비의 전액 반납 • 예측불가능한 환경변화 • 대상자에게 책임을 돌리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 동종 전력(참여제한의 경우에 한함) • 하나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해 둘 이상의 위반행위

[유형의 예시]

- 연구개발이 종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를 의미함

※ 사업의 특성 또는 불가항력 등의 사유로 혁신법 제15조에 따른 특별평가를 통하여 수행포기에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재처분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중간에 임의로 포기하여 과제를 중단함에 있어, 해당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에 책임을 돌리기 어려운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성격 및 목적, 과제를 포기하게 된 주된 사유, 과제 포기 전후의 사정, 연구개발을 수행한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감경요소의 예시]

① 연구개발자료 또는 성과의 양도·양수

- 포기 당시 연구목표 계획에 상응하는 성과물이 존재하고, 연구개발자료 및 성과를 다른 수행기관에 이전하는 등 과제가 중단되지 않도록 성실히 협력하고 그 결과 과제가 계속 수행되는 경우

② 정부 연구개발비의 전액 반납

- 과제 수행 포기 시점까지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지급받은 정부 연구개발비의 전액을 반납 완료하였거나 반납의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한 경우

③ 예측불가능한 환경 변화

- 전염병의 유행, 타국의 전쟁 등 사회적·국제적 상황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회사를 폐업, 청산 등을 하려는 경우
- 천재지변, 국가 재난사태 등으로 인한 다른 긴급과제 수행 등으로 불가피하게 과제를 포기하려는 경우

④ 대상자에게 책임을 돌리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이때, 해당자에게 귀책사유 없음이 명백히 밝혀진 경우에는 제재대상자에서 제외)

- 대표자 아닌 연구책임자로서, 연구개발과제 수행 포기가 경영상의 판단(구조조정, 직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비자발적 해고, 연구소 또는 사업부서 폐쇄 등)에 의한 결정인 경우, 그 연구책임자
- 혁신법 제2조 제3호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기관 또는 단체,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사업자등록번호의 법인 구분 코드가 '82' 또는 '83'인 법인 등 비영리기관으로서, 각 연구책임자의 권한과 책임하에 연구개발이 진행되고, 기관의 대표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경우, 대상기관 및 대표자

(12) 기술료 또는 연구개발성과 수익 미납(혁신법 제32조 제1항 제5호)

구분	제재처분	감경	기본	가중
기술료 또는 연구개발성과 수익 미납	참여제한	-	납부시까지	-

참여제한 해제사유의 예시
• 참여제한 처분 확정 후, 중대한 사정변경

[유형의 예시]

- 혁신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납부해야 하는 기술료의 일부 또는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일부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함

[참여제한 해제사유의 예시]

① 참여제한 처분 확정 후, 중대한 사정변경

※ 아래 사정이 제재처분 전에 발생한 경우, 혁신법 제3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있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 각 목에 따른 재난 등 불가항력적인 사건으로 기술료 또는 수익의 납부가 불가능한 경우
-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납부하는 경우
- 기업신용 등급 열위(해당 기업의 종합신용평가등급이 B미만인 경우)이하, 재무제표 상 자본전액잠식 상태 등을 이유로 납부 연장 요청이 있고 그에 대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승인을 하는 경우

(13) 연구개발비 회수 금액 미납(혁신법 제32조 제1항 제6호)

구분	제재처분	감경	기본	가중
연구개발비 회수 금액 미납	참여제한	-	납부시까지	-

참여제한 해제사유의 예시
• 참여제한 처분 확정 후, 중대한 사정변경

[유형의 예시]

- 정당한 사유 없이 정산결과에 따른 연구개발비 회수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참여제한 해제사유의 예시]

① 참여제한 처분 확정 후, 중대한 사정변경

※ 아래 사정이 제재처분 전에 발생한 경우, 혁신법 제3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있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 각 목에 따른 재난 등 불가항력적인 사건으로 기회수 금액의 납부가 불가능한 경우
-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납부하는 경우
- 기업신용 등급 열위 이하(해당 기업의 종합신용평가등급이 B미만인 경우), 재무제표 상 자본전액잠식 상태 등을 이유로 납부 연장 요청이 있고 그에 대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승인을 하는 경우

제5장 제재처분재검토 주요쟁점사항 및 검토결과

1. 혁신법 시행 이전 행위에 우선 적용 가능한 혁신법 규정

- (배경) 혁신법 부칙 제5조에 의하면 혁신법 시행('21.1.1.) 이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한 제재처분은 구 과학기술기본법(2020. 6. 9. 법률 제173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관계 법령을 따름

- (쟁점)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재검토 절차, 제척기간 등 제재처분의 절차와 관련된 규정을 혁신법 시행('21.1.1.)이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법 제32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⑤ 제1항에 따른 제재처분은 그 제재사유가 발생한 연구개발과제의 종료일 또는 그 제재사유가 발생한 국가연구개발활동의 종료일부터 10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
> 법 제33조(제재처분의 절차 및 재검토 요청 등) ④ 제3항에 따라 의견을 받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자 권익보호·연구 부정방지 및 제재처분의 적절성 검토 등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에 의견의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재검토를 요청한 자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재검토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재검토를 실시할 수 있다.
>
> 부칙 제5조(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이루어진 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처분은 제3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다.

- (검토결과) 혁신법 시행 이전 행위에 대한 제재처분이라 하더라도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의 재검토 절차, 제척기간 등 제재처분의 절차와 관련된 규정 적용
  - 재검토절차 :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의 재검토 절차는 제재대상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함으로 혁신법을 우선적용한다 해서 위법하다 할 수 없음
  - 또한, 구 과학기술기본법에는 이의신청 절차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의 재검토 가능 ☑ p.22-23 | 제2장의 3. (5), ☑ p.30 | 제3장의 4. 참고
  - 제척기간 : 혁신법상 처분 시효 규정의 목적, 유사 사례에서 법원의 판단 경향* 등으로 볼 때 제척기간 규정 적용 ☑ p.18-19 | 제2장의 3. (2) 참고

    * 개정 법령을 우선하여 적용하더라도 일반 국민의 불이익이나 고통을 제거하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법령의 우선적용이 허용됨
  - 또한, 행정기본법 상 행정청의 제재처분 제척기간의 도입 취지 고려

2. 연구자 등이 타 과제로 인해 참여제한 처분을 받은 이후 수행중인 기존 과제의 중단 여부

- (배경) 타과제로 참여제한 처분이 확정된 기관 또는 개인에 대하여 계속 중인 과제의 중단 처리 논란

- (쟁점) 혁신법상 참여제한 결정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참여제한 처분을 받은 기관 또는 개인이 참여 중인 기존 과제의 운영을 중단하여야 하는지 여부

> 법 제34조(제재처분의 사후관리) ①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제33조제6항에 따라 결정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참여제한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지체 없이 모든 국가연구개발활동(연구지원은 제외한다)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여야 한다.

- (검토결과) 타 과제로 인해 참여제한 처분이 확정된 자가 ① 연구자인 경우 계속 중인 과제에서 배제(혁신법 제34조 제1항), ② 연구책임자인 경우, 연구책임자 변경 또는 과제 중단(혁신법 제15조 제1항 제2호, 혁신법 제34조 제1항), ③ 기관인 경우, 해당 연구개발기관 변경 또는 과제 중단(혁신법 제15조 제1항, 혁신법 제34조 제1항), ④ 참여연구원이 아닌 대표자인 경우, 추가 조치 해당 없음

  - 수행 중인 과제를 중단하기 위해서는 혁신법 제1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야 하고, 단지 타 과제 참여제한 확정만을 이유로 계속 중인 과제를 중단할 수는 없음

    * 과제의 중단은 제재처분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불이익한 행정조치이므로 법령에 근거가 있거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할 것임

3. 연구개발비 사용용도 기준 위반 금액의 자진반납 시 환수처분 금액 산정 기준

- (배경)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 위반 금액에 대해 환수조치를 규정 ☑ p.13-14 | 제2장의 2. (7) 참고

> 법 제32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재처분과 별도로 이미 지급한 정부 연구개발비 중 제재사유와 관련된 연구개발비를 환수할 수 있다.
>
> 시행령 제59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이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연구개발비를 사용한 경우 해당 연구개발기관을 대상으로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중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금액만큼 환수(이하 “연구개발비환수”라 한다)할 수 있다.

- (쟁점) 환수처분 이전에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한 연구개발비 사용금액을 자진반납하는 경우에 대한 조치방안
  - 환수처분 전이라도 제재처분 대상자에게 용도 외 사용금액 자진반납 유인을 제공하여 위반금액의 신속한 국고반납을 유도할 필요
- (검토결과) 환수처분 전 자진반납 시 해당 금액만큼 환수된 것으로 갈음 가능
  - 제재처분(참여제한, 제재부가금)에 있어서도 환수처분 전 위반금액을 자진반납한 경우를 제재처분의 감경사유에 포함 ☑ p.63 | 제4장의 2. (4) 참고
- (관련판례1) 국가연구개발과제 인건비 중 일부를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실제 참여하지 않은 인원을 참여연구원으로 하여 인건비를 지급받은 사례

처분 양정 상의 재량권 일탈·남용이 문제된 사례(대법원 2016두39870, 2016두39887)
① 인건비 용도의 사업비를 사적인 이익을 위해 소비하거나 빼돌린 것이 아니라 원고 회사의 경영난으로 인해 회사 운영자금으로 우선 사용한 것으로 원고 회사가 종국적으로는 그 대부분을 본래 용도에 따른 인건비로 지급한 점, ② 원고들이 이 사건 각 과제를 비교적 성실하게 수행한 점, ③ 구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은 용도 외 사용 사실을 적발했을 때 해당 금액이 사업비 계정에 이미 회복된 경우에는 참여제한기간을 1년 이상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도 ‘사업비 계정에 이미 회복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④ 원고 회사가 입게 될 불이익이 현저히 큰 점 등을 고려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판단함

- (관련판례2) 국가연구개발과제 출연금 관리 계좌에서 임의로 인출하여 회사 일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사례

처분 양정 상의 재량권 일탈·남용이 문제된 사례(대구지방법원 2015구합23481 판결)
① 횡령한 사업비는 사적 용도가 아닌 원고 회사의 일반 운영비로 사용하였고, 해당 금액을 변제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② 현장실태조사 결과 과제 자체는 성공적으로 수행한 점, ③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은 환수 기준의 적정한 행사를 위하여 그 기준을 점점 구체화하여 왔으므로, '환수'가 반드시 전액 환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 ④ 횡령 금액은 전체 사업비의 16%, 정부출연금의 26%에 불과하고, 연차에 따라서는 횡령금액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하는 점, ⑤ 특정 연도의 횡령 비율이 30%를 초과한다고 하여 전 수행기간에 대해 출연금 전액을 환수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한 점을 종합하여 이 사건 환수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훨씬 크므로 총 수행기간의 출연금 전액 환수를 명한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함

4. 수사·소송 등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한 제재처분

- (배경) 제재처분 대상자가 수사, 소송 및 재판 등이 진행중인 사유로 제재처분 결정 유예 요청
- (쟁점) 수사, 소송 및 재판 등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면 해당 수사, 판결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지 여부
- (검토결과) 수사 및 판결이 진행 중인 경우라 하더라도 제재처분이 가능
  - 형사판결 확정에 앞서 일정한 위반사실을 들어 행정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절차적 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음
- (관련판례) 수사나 형사판결 확정 전임에도 불구하고 제재처분 사유, 종류·수준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제재처분을 권고할 수 있는 사례

수사·형사판결 확정 전 제재처분 사례(대법원 2015두59808, 17.6.19.)
일정한 법규 위반 사실이 행정처분의 전제사실이자 형사법규의 위반 사실이 되는 경우에 동일한 행위에 관하여 독립적으로 행정처분이나 형벌을 부과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고, 형사판결 확정에 앞서 일정한 위반사실을 들어 행정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절차적 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음

- (권고사항) 제재처분 사유가 되는 사실이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은 경우, 혁신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필요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5. 행정심판·소송 진행 시 조치사항

- (배경) 행정심판 또는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제재처분 효력 및 사후관리에 대한 문의 빈번
- (쟁점) 행정심판 또는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집행정지 결정이 된 경우, 제재처분 효력 유무와 그에 따른 사후관리 방안
- 심판청구 또는 소송 제기는 제재처분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심판이나 소송 중이라도 국가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참여제한 및 제재부가금 납부 절차 진행 가능 (혁신법 제34조)
  - 다만, 제재처분 정보공개는 보류할 수 있음(혁신법 제33조 제7항)
  - 연구책임자의 참여제한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또는 소송 중이라 하더라도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특별평가 및 연구비 집행 중단 가능(혁신법 제15조 제1항 제2호)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재처분 대상자에게 제재처분을 통보하더라도, 당사자가 「행정심판법」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라 제재처분의 집행, 즉 연구개발과제 참여제한이나 제재부가금 부과에 대해 그 집행의 정지를 요청할 수 있음. 요청이 인정되어 제재처분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과한 제재처분의 효력과 그 처분을 실행하기 위한 모든 절차가 일시적으로 중단됨
  - 집행정지 기간 동안에는 제재처분 대상자에 대한 연구개발과제 참여제한 기간을 적용하거나 제재부가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절차를 진행할 수 없고, 집행정지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절차를 다시 시작해야 함
  - 예를 들어 연구책임자에게 연구개발과제 참여제한 처분이 부과되었으나, 법원에서 해당 참여제한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그 기간 동안에는 해당 연구책임자는 참여제한 상태가 아니며, 혁신법 제15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하여 특별평가를 실시하거나 연구비 집행을 중단하는 조치도 불가

    ※ 다만, 혁신법 제15조 제1항 제2호 외 다른 사유가 있다면, 특별평가 및 연구개발비 집행 중단 가능

행정심판법 제30조(집행정지) ① 심판청구는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續行)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는 처분,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 때문에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처분의 효력,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집행정지"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행정소송법 제23조(집행정지) ①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②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執行停止"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부록〉 연구자를 위한 신고·보상 제도 안내

1 목 적

- 본 안내문은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연구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연구자가 참고할 수 있는 신고·보상 제도를 간략하게 소개하며, 상세 내용은 공공재정환수법, 부패방지권익위법 및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참고할 것을 권고함

2 신고제도

누구든지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행위 또는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대상

- **부정청구 등 행위 (공공재정환수법):** 보조금, 보상금, 출연금 등을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외사용, 오지급한 경우
- **부패행위 (부패방지권익위법):** 공공기관의 예산 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부패행위는 권익위 신고 건에 한하여 권익위에 보상 신청 가능

구분	예시
부정청구 등 행위	✓ 연구과제와 무관한 기술개발, 물품 또는 장비 구매 ✓ 연구비를 사적 용도로 사용 ✓ 집행 관련 허위 세금계산서 등 허위서류 제출, 비용 부풀리기
부패행위	✓ 이미 개발이 완료된 제품을 신규 개발로 속여 연구개발비를 편취 ✓ 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을 참여연구원으로 등록하여 연구비 편취 ✓ 학생 인건비와 연구 수당 등을 회수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

※ 「부패·공익신고 및 보상사례집」(국민권익위 발간), 청렴포털 '신고맞춤사례' 참고

신고 방법

- 온라인: 청렴포털(www.clean.go.kr)
- 방문: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 국민권익위원회(세종)
- 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우)30102

청렴포털(www.clean.go.kr)

- 관련 법·제도 안내, 신고, 상담, 보호·보상 신청 및 처리 과정 열람 서비스 등 제공
- 포털에서 신고 후 보상 신청 시 '나의 신고사건 조회' 기능을 통해 간편 처리 가능

신고 상담 온라인 청렴포털(www.clean.go.kr) / 부패신고 상담전화 1398 또는 110

신고자 보호

- **(비밀 보장)** 신고자 동의 없이 인적사항,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 공개 금지
- **(책임 감면)** 직무상 비밀준수의무 면제, 신고 관련 형사처벌, 징계, 불합리한 행정처분 감면 가능 (재량사항)
- **(신분보장 조치 신청)** 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받은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원상회복이나 그밖에 필요한 조치 신청 가능
- **(신변보호 조치 요청)** 신고자 등과 그 친족·동거인이 신고 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 요구 가능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8조의2)

- 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로 하여금 신고, 자료제출, 의견진술을 대리하게 하는 제도(국민권익위가 수당을 지급하는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 운영)

※ 청렴포털(www.clean.go.kr)에서 국민권익위에 신고 시 활용 가능

3 보상제도

국민권익위원회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 절감 시 보상금 지급 기준에 따라 최고 30억원까지 지급

〈 보상금 지급 기준 〉

보상대상가액*	보상금(최대)
1억원 이하	보상대상가액의 3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3천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20%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1억 1천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4%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3억 2천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8%
40억원 초과	4억 8천만원 + 40억원 초과금액의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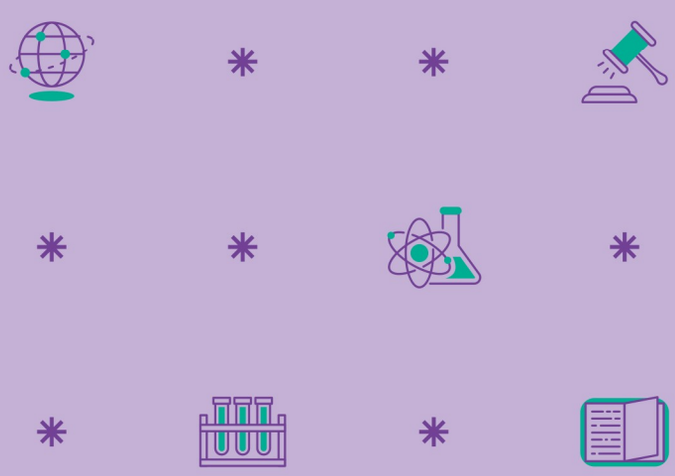
* 보상대상가액이란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 그 금액 의미

보상금 신청

- 온라인: 청렴포털(www.clean.go.kr)
- 방문: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 국민권익위원회(세종)
- 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우)30102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처분 가이드라인

2026. 0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Ministry of Science and ICT

KISTEP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orea Institute of S&T Evaluation and Planning